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2014. 6

최 원 · 김세중

■ 목차

요 약 / 1

I. 서론 / 14

1. 배경 및 목적 / 14
2. 자유화의 정의 / 15
3. 보험시장의 개방 / 16
4. 보험산업과 규제(Regulation) / 22
5. 보고서의 구성 / 26

II. 보험시장 개방 / 28

1. 시장개방의 발단 / 28
2. 한미 통상마찰 추이와 배경 / 31
3.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산업 / 32
4.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 33
5.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 35
6.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시장 추가개방 / 36
7. 보험시장 개방의 결과와 평가 / 38

III. 금리자유화와 요율자유화 / 40

1. 금리자유화의 배경 / 40
2.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보험요율 자유화 / 42
3. 보험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 44
4. 요율자유화에 대한 평가 / 48

IV. 규제완화 / 51

1. 시장성숙모형과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 / 51
2. 보험산업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 / 54
3. 보험상품 다양화 / 57
4. 판매채널 다양화 / 62

■ 목차

-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변화 / 64
- 6. 시사점 / 67

V. 자산운용과 지급여력 규제 / 68

-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 68
- 2. 자산운용 규제 완화 / 70
- 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 74

VI. 보험시장 자유화의 평가와 시사점 / 78

- 1. 보험시장 개방 / 78
- 2. 효율자유화 / 80
- 3. 보험산업 규제완화 / 81

| 참고문헌 | / 83

| 부록 | 해외보험시장 자유화 / 85

■ 표 차례

- 〈요약 표 1〉 신보험상품 도입 추이 / 8
- 〈요약 표 2〉 보험산업 판매채널 관련 변화 / 9
- 〈표 II-1〉 1차 보험시장 개방 / 30
- 〈표 II-2〉 외국계 보험회사 점유율 추이 / 35
- 〈표 II-3〉 2차 보험시장 개방 / 38
- 〈표 III-1〉 일반손해보험 자유화 일정 / 46
- 〈표 III-2〉 자동차보험 자유화 일정 / 46
- 〈표 III-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자유화 일정 / 48
- 〈표 IV-1〉 신보험상품 도입 추이 / 61
- 〈표 IV-2〉 보험산업 판매채널 관련 변화 / 64
- 〈표 IV-3〉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변화 / 66
- 〈표 V-1〉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 69
- 〈표 V-2〉 자산운용 규제 / 73
- 〈표 V-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 77
- 〈부록 표 1〉 독일과 영국의 보험감독제도 비교 / 95

■ 그림 차례

- 〈요약 그림 1〉 시장개방의 의의 / 2
- 〈요약 그림 2〉 보험시장 자유화의 의의 / 3
- 〈요약 그림 3〉 시장성숙모형 / 7
- 〈그림 I-1〉 시장개방의 의의 / 19
- 〈그림 I-2〉 보험시장 자유화의 의의 / 26
- 〈그림 II-1〉 보험회사의 수 추이 / 35
- 〈그림 IV-1〉 시장성숙모형 / 52
- 〈그림 IV-2〉 시장성숙모형과 규제완화 / 53
- 〈그림 IV-3〉 생명보험 채널별 비중 추이 / 56
- 〈그림 IV-4〉 장기손해보험 성장률 및 비중 추이 / 59
- 〈그림 V-1〉 총요구자본 산출 시 분산효과 반영 공식 / 76
- 〈부록 그림 1〉 일본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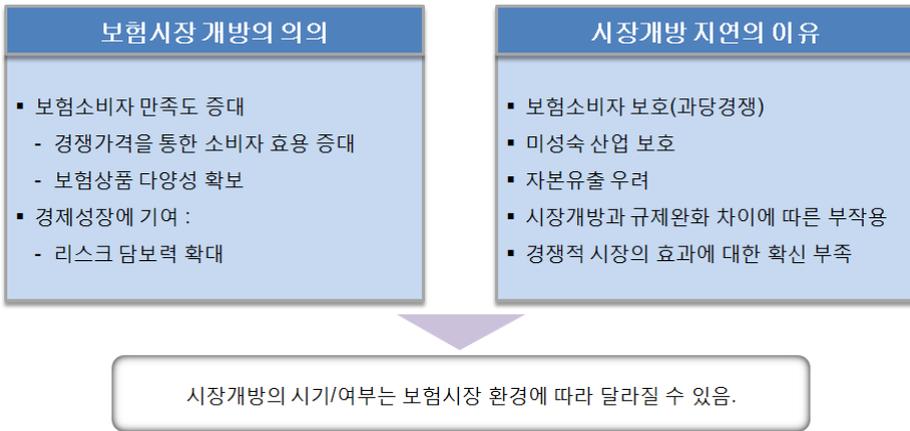
요약

I. 서론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 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이해하는 관점을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찾을 수 있음.
 -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90년대 후반 자유화와 관련한 대부분 자료들이 보험요율에 국한되어 있고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자료가 많아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음.

- 시장개방의 경우 개방 여부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시장개방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시장개방 지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모두 존재하였기 때문임.
 -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은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고, 경쟁적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시장개방의 효율성 극대화에 미치는 효과, 자국 내 산업 경쟁력 문제,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 등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대립하였음.

〈요약 그림 1〉 시장개방의 의의



■ 시장개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산업 규제도 규제 필요성과 더불어 규제완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완화가 중요함.

○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비롯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함.

○ 그러나 어떤 형태의 규제이든 자율경쟁을 저해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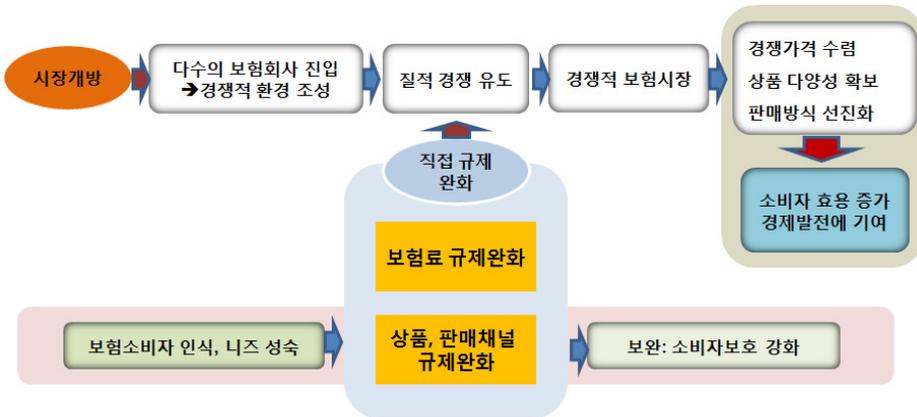
– 예를 들어 강한 요율규제는 보험료를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인가는 해당 보험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숙도 등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음.

■ 보험시장 자유화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적 보험시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의의를 가지며, 보험시장 자유화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장이라고 정의함.

- 첫째, 시장개방 측면에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경쟁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는 시장을 말함.
- 둘째,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험상품 제공과 관련한 정부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함.
- 다만, 성숙된 보험시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재무건전성 강화가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자유화의 정의에 포함함.

〈요약 그림 2〉 보험시장 자유화의 의미



II. 보험시장 개방

-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두 차례의 시장개방 과정을 경험하였음.
 - 1차 보험시장 개방은 1980년대 초반 대미 통상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생명보험 시장개방을 말함.
 - 2차 보험시장 개방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과 보험시장 추가 개방을 의미함.

- 1980년대 초반 대미 통상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1983년 1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미국 보험회사들의 지점 영업환경 개선과 추가적인 보험시장 개방을 요구하였음.
 -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의 차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개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함.
 - 손해보험의 경우 내국인에 대한 영업도 허용된 반면,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미군과 미군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만이 허용됨.
 - 4차례 한·미 경제협의회를 통하여 미국 생명보험회사 1개 지점설치 허용 및 추가 진출 논의, 화재보험 풀(pool)에 미국의 2개 손해보험회사 참여 등이 이루어짐.

-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하여 두 차례의 보험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짐.
 - 1996년 OECD 정회원이 되는 과정에서 보험시장 개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 우리나라는 19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으며 정부는 강력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됨.
 - 1998년에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5월), 외국환 거래 자유화 방안 발표(6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7월) 등 외국자본의 국내금융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됨.
 - 두 차례에 걸친 보험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외국회사들의 국내 보험시장 진입은 가속화 됨.
 - 특히,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인식되었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ENT: Economic Needs Test)가 폐지되면서 외국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국내 진출의 계기가 마련됨.

Ⅲ. 금리자유화와 요율자유화

- 우리나라의 요율자유화는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장개방과 더불어 보험산업 자유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금융시장 개방화로 금리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8월 부분적 금리자유화 조치가 발표되었으며, 본격적인 금리자유화가 시작됨.
 - 금리자유화로 시중금리가 실제금리에 다가가면서 은행과 단자회사들이 고금리 상품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고금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보험수요 이탈이 예상되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시행과 저금리 환경에서의 자유화로 급격한 시중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음.
 -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 간 가격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상품이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요율 자유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음.

-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1994년 4월부터 보험종목별로 차등을 두되 거의 모든 종목을 1997년까지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음.
 - 정부는 요율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비교적 영향이 적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자유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1993년 12월 10일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계획'을 발표함.
 -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정요율체계를 범위요율체계로 전환한 이후에 자유요율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율자유화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와 시사점들이 존재하고 있음.
 - 단계적 보험요율 자유화로 시장에 주는 충격과 국내 보험회사들의 요율산

출 및 인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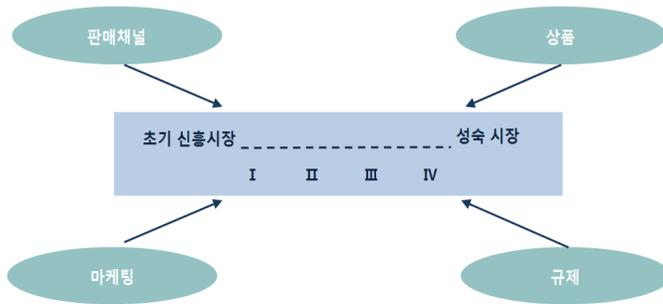
- 반면, 초기 범위요율제도가 가격자유화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요율자유화 시기를 더욱 늦춘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함.
-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는 진입규제 완화와 경쟁도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지나친 가격경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모두 존재함.
- 생명보험의 경우 요율자유화가 가격인하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존재¹⁾하는데, 요율자유화가 반드시 가격인하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경험위험률 사용 확대와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도입 등 실질적인 충분한 보험가격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자동차보험 산업 적자 누적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요율자유화가 완료되었으나 서민경제와 관련이 커서 자율적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이 있음.

IV. 규제완화

- Berlin(2010)은 보험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상품, 판매채널, 감독규제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시장성숙모형(Market Maturity Model)을 제시함.
 - 시장성숙모형은 보험시장의 발전단계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통합시장(Integrated Market)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별 발전과정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함.
 - 보험시장 성숙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역사적 성숙과정을 구분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 규제를 설명하고자 함.

1) 금융감독원(2007).

〈요약 그림 3〉 시장성숙모형



자료: Berlin, J. (2010).

-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또는 금융산업 간 업무영역의 확대와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영역 다툼이 제기되기도 함.
 - 보험산업의 경우 표면적으로 크게 다른 금융산업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 저축성 상품과 경쟁이 존재함.
 -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시 은행의 보험시장 잠식, 불공정 판매, 금융산업의 은행 집중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논란이 되었음.
 - 2007년 8월 도입된 자본시장 통합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권역 간 업무영역을 확대시키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한층 치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
 - 과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생·손보 간 업무영역 논란이 존재하였음.
 - 생·손보 모두 상해, 질병보험을 주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의 제3보험 실손보상이 허용됨.
 - 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영업 다툼이 존재하였으나, 1988년 생·손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손해보험 업무영역 확대가 추진되면서 손해보험 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허용의 근거가 마련됨.

- 시장개방과 효율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짐.
 - 보험상품 인가제도는 1988년 이전 사전인가제도 이후 점진적으로 간소화되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고불요상품이 확대되는 등 상품개발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됨.
 - 인가제도의 간소화는 보험회사들이 더욱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되었으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1992년 무배당보험 상품 도입, 1994년 손해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의 판매, 2001년 5월 변액보험 판매, 2003년 8월 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상품 등장 등 취급 상품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 생명보험 가운데 저축성보험의 비중은 약 65.9%이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약 18.2%나 차지함.
 - 이와 같은 저축성보험의 급성장은 2000년대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쏠림현상으로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요약 표 1〉 신보험상품 도입 추이

보험상품	시기
무배당보험	1992년
제3분야 생·손보 겸영	1997년
변액보험	2001년
자산연계형 상품	2003년
생명보험 실손보험	2003년

- 보험시장 자유화의 진전으로 보험상품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판매채널의 다변화도 추진되었으며,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중심의 판매채널로 변화하고 있음.
 - 초기 판매채널은 보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채널이 적극적으로 활용됨(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
 - 보험상품이 다양화되어지고 판매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IT기술과 관련 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판매채널 다변화가 추진됨(소비자 중심의 판매채널로 변화).
 - 보험산업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으며 2003년에는 단계적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이 시행됨.

〈요약 표 2〉 보험산업 판매채널 관련 변화

연도	주요 내용
1960년대 이전	• 직급위주의 판매제도
1960년대	• 생명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직급제도 대리점, 보험계약법, 보험모집 단속법
1970년대	• 직급제도, 손해보험 모집인 제도, 보험모집인 등록시험
1980년대	• 겸영대리점, 대리점허가제
1990년대	• 복수대리점, 독립대리점, 중개사제도 도입
2003년	• 방카슈랑스 도입 및 영업규제 신설
2007년	• 교차모집제도, 마트슈랑스 등 신채널 확대

주: 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보험업법 개정 시 보완 또는 추가되었다는 의미임.

자료: 안철경·이경희(2011. 11),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p. 36 표 인용.

-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과 관련한 감독규제는 상품개발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의 종류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제의 변화는 특히 2000년 변액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
 - 2012년 10월 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상에 변액저축성보험 비교공시 메뉴를 신설함.
 - 2005년 6월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이 제정 시행되고 불완전 판매 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도 2008년 시행됨.
 - 2011년 8월에는 변액보험 판매 시 계약자 나이,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 투자가 적합한 사람에게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도입됨.
- 보험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시장성숙모형에서 언급된 완전한 성숙시장(4단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흥시장 단계를 벗어나 성숙시장 단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980년대 시장개방 이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규모 설계사를 통한 단기 저축성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졌고, 시장성숙모형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흥시장 단계인 Phase I에 머물러 있었음.
 - 보험시장 개방이 진행되고 보험요율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으며, 또한 다양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채널도 다변화되기 시작함.
 - 시장성숙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흥시장 단계 Phase I에서 벗어나 점차 성숙된 시장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판매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규제완화와 개선도 이루어짐.
 - 한편, 보험상품 자율성 확대와 관련 규제완화 추세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V. 자산운용과 지급여력 규제

-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한 규제의 핵심은 자본규제를 통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데 있으나 강한 자본규제를 가할 경우 금융기관의 효율성 저해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
 - 은행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등을 고려한 'BIS 기준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자본비율의 8% 정도를 적용함.
 - 증권회사는 유동성 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금융위 권고 비율은 최소 150% 이상 유지임.
 - 보험회사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에 따른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금감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음.

- 자산운용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자산운용 성과가 각 보험회사의 경쟁력인 것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보험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
 - 1970년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는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내자 동원 수단이 절실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선진화된 자산운용 기법의 도입이 지연된 것은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1980년 후반부터 자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의 변화가 논의되기 시작함.
 - 1990년대에는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규제방식이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되어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됨.

■ 보험산업의 경우 다양한 손실 보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욱 클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성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

○ 1970년대 이후 보험산업이 급격한 외형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개선은 미비하였으며 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함께 간접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감독이 요구되기 시작함.

○ 본격적인 지급여력제도는 1994년 6월 생명보험회사들의 이연자산상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담보력 확대기준을 폐지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됨.

○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EU식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여력기준을 향후 5년에 걸쳐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음.

○ 2008년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 4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를 병행 시행하였음.

■ 지급여력제도와 함께 중요한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 방법 중 하나인 책임준비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에는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이 제정됨.

○ 1987년 신설된 생보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고자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혼합비례방식인 K율 방식을 도입함.

○ 1998년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이 제정되어 유가증권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가로 평가되는 보험자산과 원가로 평가되는 보험부채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결손제도가 도입됨.

VI. 보험시장 자유화의 평가와 시사점

-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유화를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충족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효율성 증대보다 외형확대 경쟁 심화만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외환위기 이후 추가 시장개방의 성과는 이전에 이루어진 시장개방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개방 과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임.
 - 자유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보험요율 자유화가 완료되었으나 실제로 완전한 보험요율 자유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요율과 관련한 간접적인 규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보험요율 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는 차후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성숙한 보험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역할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험산업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개방 시기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 2000년대 규제완화 과정은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선진화된 규제수준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현재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선진 보험시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이해하는 관점을 보험시장 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자유화라고 하면 1980년 후반부터 추진된 시장개방과 보험산업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보험시장의 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많은 규제의 변화도 있었다. 이후 보험시장 개방과 보험요율 자유화가 마무리된 2000년대 초반까지 요율자유화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에는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자유화와 관련한 대부분 자료들이 보험요율에 국한된 것이었고, 또한 단순하게 사실을 나열한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유화의 정의

보험시장 자유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화(liberalization)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시장 자유화라고 하면 자율성이 보장된 시장, 즉 자율시장(liberal market)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시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자유화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율시장을 크게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자율성과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regulation)의 수준(level)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Boonyasai, Grace, Skipper(2000)의 연구에서는 시장접근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완화를 따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²⁾ 그들은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보험회사들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지는 등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대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 자유화라고 정의하고, 규제완화는 이와 같은 시장 자유화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³⁾

그러나 이후 Harold D. Skipper(2000)는 시장 자유화란 규제 변화를 통하여 자율시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⁴⁾ 다시 말하면, 시장접근의 자율성과 규제완화는 각각을 나누어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는 시장이야말로 바로 자율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시장이란 경쟁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정부 규제가 완화된 시장을 의미하고,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경쟁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가의 여부와 보험상품 제공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규제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Thitivadee Boonyasai, Martin F. Grace, Harold D. Skipper, Jr.(2000).

3) 해당 연구에서는 시장접근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완화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관관계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 자유화를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자율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4) Skipper, Starr, Robinson(2000).

본 보고서에서는 Harold D. Skipper(2000)의 보험시장 자유화와 관련한 발전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유화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개방 측면에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경쟁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는 시장이다. 둘째,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험상품 제공과 관련한 정부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자유화를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시장의 발전 또는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규제완화는 다른 방향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규제는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어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이 더욱 성숙된 보험시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규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 강화가 자율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는 보험산업이 성숙되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내린 자유화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보호 강화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선진화된 보험시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강화 추세 역시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자유화의 정의에 포함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3. 보험시장의 개방

가. 시장개방의 의미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될 당시, 과연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개방과 경쟁에 있어서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

다. 이러한 우려로 시장개방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고 보험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보험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⁵⁾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개방에 대하여 언급하기에 앞서 보험시장 개방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은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적 시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개방은 보험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상품 공급 기회를 확대시킨다. 이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리스크 담보력과 자금조달 능력 등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보험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들의 국내 보험산업 진출은 다양한 보험산업의 경영기법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고, 규제 측면에서도 선진화가 가능하게 해준다.

제한된 시장개방 수준과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보험시장(restrict insurance market)의 경우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과정을 통하여 자율보험시장(liberal insurance market)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보험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과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 모두에게 더욱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시장이 더욱 효율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으로 자율보험시장을 지향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시장개방을 지연하고 규제가 존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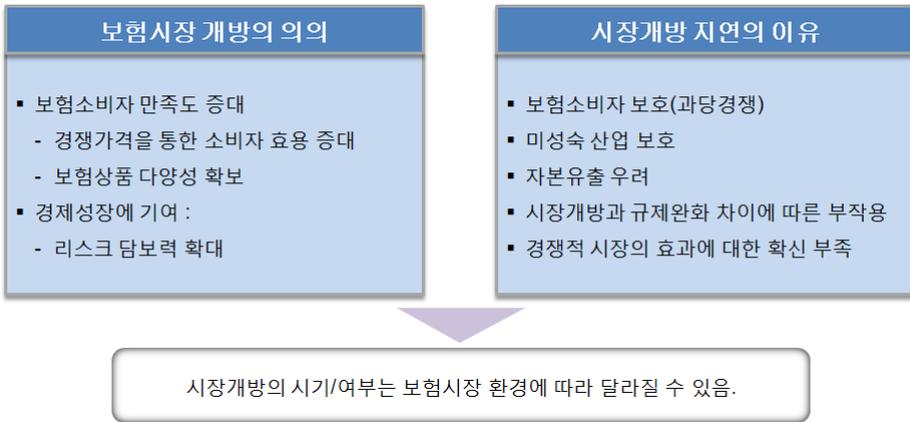
5) 이경룡(1990).

보험시장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율보험시장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시장개방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Harold D. Skipper(2000)는 이러한 행위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째, 시장개방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국가 전체의 이익에 앞서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국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자국 보험회사들이 지배되는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경쟁적 자율보험시장이 자국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넷째, 시장개방이 과연 자국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 보험회사를 통한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금유출은 자국 금융산업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보험시장 개방은 자국 금융산업이 가진 규제완화 과정과 그 속도를 같이 해야 하며, 둘 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 지연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시장개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한지의 문제, 그리고 시장개방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대면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개방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1〉 시장개방의 의의



나. 보험산업의 진입규제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논의는 시장이 어떠한 진입규제를 가지고 있는가의 논의와 연관된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영위가 가능한 보험상품의 종류, 납입자본금의 크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특별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도 해당 산업의 시장 개방 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위가 가능한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도 보험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할 경우 보험사업의 개시가 가능하며, 일부 보험종목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일부 통신후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원하는 보험회사는 앞서 언급한 자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업무 개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에서는 외국보험회사의 설립을 특별히 다르게

규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업 영위를 원하는 자의 국적과 관련하여 일부 다른 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사업 영위를 원하는 자가 우리나라 국적일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보호가 가능하고, 보험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경우 설립이 허용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보험사업 영위를 원하는 자가 외국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영업기금 요건 이외에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자산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종목별로는 허가를 받아야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생명보험업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손해보험업 보험종목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 있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제3보험업 보험종목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를 설립하기를 원할 경우 기본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물적 시설의 충족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증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향후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다. 무분별한 보험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일부에서는 완전한 시장 진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사업 영위를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시장의 진입과 퇴출과 관련한 규제 수준에 대한 논란은 앞서 언급한 보험시장 개방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논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보험소비자들이 건실한 보험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갖추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자산운용 능력 등을

기초로 건전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다면 시장의 진입과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연스러운 퇴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숙도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시장의 경쟁 질서가 혼탁해지고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진입과 관련한 규제 수준 역시 보험산업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진입규제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시장개방 과정

일반적인 보험시장의 개방은 자국 보험시장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시장개방 지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초과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개방은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외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험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미 통상마찰이 심화되던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미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인 AHA와 CIGNA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영업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개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1980년 후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진행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그리고 1995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보험시장 개방 압력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1992년 8월부터 무배당 보험상품 판매 허용을 시작으로 보험시장 단계적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외국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1993년부터 해외소재 외국보험회사에 적하보험 등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1993년 4월부터는 전국적인 보상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회사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2개 보험회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복수 대리점을 손해보험의 경

우 1992년 4월부터, 생명보험의 경우 1994년부터 각각 허용하였으며, 모든 보험 회사 상품의 동시 취급 및 판매는 손해보험의 경우 1996년 4월부터, 생명보험의 경우 1997년 4월부터 허용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에 대하여 개방 시기가 보험산업 성숙도에 비하여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시장개방 시기가 더 지연되어 외형 중심의 단기적인 성장이 지속되었다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금보다 더욱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⁶⁾

4. 보험산업과 규제(Regulation)

가. 규제의 필요성

보험산업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다른 산업에 비해 다양한 규제가 보험산업에 존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보험이 가지는 경제적 역할과 더불어 보험산업에 강한 규제가 부과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는 한편, 전 세계적인 탈규제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보험산업은 크게 위험의 전이(risk transfer), 위험의 통합(risk pooling), 위험의 배분(risk allocation)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보험시장에는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의 외부성 문제가 존재하며, 시장 실패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의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나타난다. 보

6) 이경룡(1990)을 참조하였음.

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보험계약자는 복잡한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계약이 가지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험시장이 가지는 외부성 문제들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첫 번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자가 미래의 시점에 보험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통한 리스크 전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높은 재무적 안정성은 규제를 필요로 한다. 이는 단지 보험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진다면 금융기관의 존재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거시적으로도 중요한 금융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파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거시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보험산업에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들도 규제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는 보험상품이 무형의 서비스 상품으로써 생산능력이나 재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외형경쟁으로 보험회사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출혈경쟁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

결국, 보험시장의 특성에 의해 요구되는 규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귀결된다. 보험상품을 소비하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의 재무적인 안정성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인가는 해당 보험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숙도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나. 규제완화의 효과

보험산업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근거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규제이든 자율경쟁을 저해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요율규제가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예이다. 요율규제는 보험료를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한다. 보험료가 경쟁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반면 보험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유인이 없고 비가격 경쟁을 통한 외형확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가 경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들은 보험계약을 잃을 위험에 직면한다. 또한 보험시장에 과소 공급을 가져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요율 규제가 사라지더라도 시장 구조가 경쟁적이지 않다면 경쟁가격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보험시장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요율규제 완화는 반드시 시장경쟁 확대를 위한 시장개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

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규제완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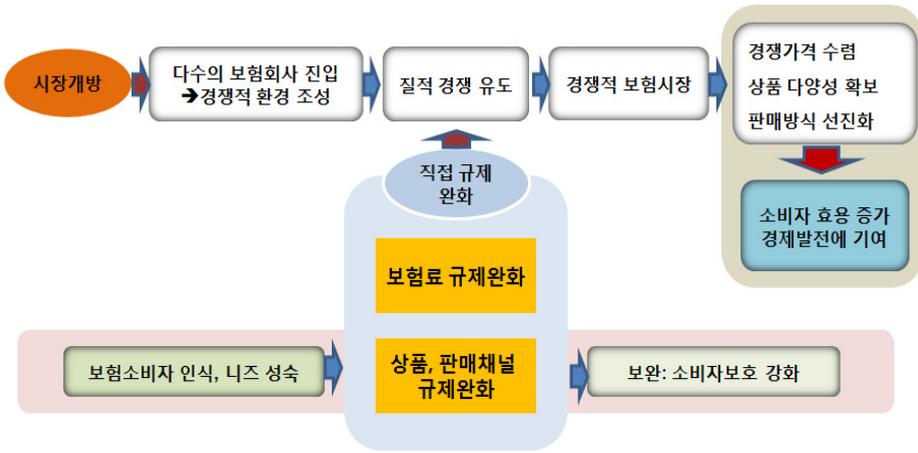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모든 보험회사가 단일요율을 사용하는 강한 요율규제하에 있었다. 가격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영업조직을 확장하는 외형경쟁에만 치중해왔고 다른 금융산업과의 경쟁 없이 단기저축성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였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내자 동원 수단으로 보험산업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였고,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낮아 판매가 용이한 단기저축성상품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⁷⁾ 그

7) 이경룡(1990).

러나 1970년대 후반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개혁의 바람으로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부터 금융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보험산업도 효율자유화 논의에 착수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보험시장 개방과 효율자유화는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시에는 규제완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파산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보험효율 자유화는 보험회사 간의 경쟁형태를 외형확대 경쟁에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효율자유화가 금융산업 전반의 금리 자유화와 함께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자산운용 상의 변화도 함께 야기되었다. 우선 타 금융기관의 상품과 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상품으로 유니버설보험,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 변액보험 등의 신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감독당국의 신상품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험회사가 시중금리나 금융시장에 민감한 상품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자산운용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했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도 상품 다양화와 보험 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으로 설계사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점차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1-2〉 보험시장 자유화의 의의



5. 보고서의 구성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은 크게 시장개방과 요율자유화를 축으로 하여 상품, 자산운용, 판매채널 등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감독제도 또한 직접규제에서 점차 지급능력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규제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이러한 우리나라 보험산업 자유화의 흐름을 따라서 서술한다. 지금까지 기술된 I 장에서는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하여 정의하고 보험산업 자유화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 더불어 보험산업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규제완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I 장과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자유화를 촉발하게 된 두 가지 주요 동인으로 여겨지는 시장개방과 금리자유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내부적인 니즈에 의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개방이 아닌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따라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특히, II 장에서 우리는 단계적인 보험시장 개방 과정을 1차 보험시장 개방과 2차 보험시장 개방으로 구분하고, 두 차례에 걸친 보험시장 개방이 가지는 특성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이와 동반한 보험
요율자유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을 통
하여 변화되는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완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즉, 시장개방과 요율자유화에 따라 부수적으로 진행
되어 온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 자산운용, 감독제도 등의 변화를 기술하고 이러
한 변화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V장에서는 보험산
업의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 추세와 건전성 규제의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다. VI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자유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
과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보험시장 개방

1. 시장개방의 발단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보험시장 개방은 1980년대 초반 대미 통상압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3년 1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미국 보험회사들은 지점 영업환경 개선과 추가적인 보험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보험시장 개방 정도는 미미하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사무소가 개설되고 미군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내국인에 대한 영업도 허용되었다. 반면,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해방 직후 미군과 미군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만이 허용되었고 이후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 영업만이 가능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의 차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개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일부 내국인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내국인에 대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규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제한적인 영업 규제에 대한 철폐 요구는 1984년 1월 제3차 한·미 경제협의회와 1985년 7월 2일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계속되었다. 미국 정부는 생명보험 시장의 개방을 가장 먼저 요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화재보험에 대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풀(pool)제도 폐지와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즉시 참여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는 「미국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의 보복조항 등을 근거로 보험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는 1974년에 제정된 법률로 차별적인 외국의 법률 및 정책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1985년 9월 7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미국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 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이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경고의 의미가 담긴 행위가 이루어졌다.

4차례 한·미 경제협의회 이후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1, 2차 실무자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1986년 말까지 미국 생명보험회사 1개사의 지점설치 허용 및 추가 진출 허용에 대한 추후 검토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하였다. 또한, 특수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풀(pool)에 대해서 1986년 7월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2개 손해보험회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다만,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추가진출 논의와 재보험 시장에 대한 개방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도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자유화에 대해서도 공익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재무부는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외국생명보험사업자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을 1986년에 제정하였다. 동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자격 요건은 우선 자국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수입 보험료 및 자산규모가 기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당해 연도별 평균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여야 하며, 해당 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정부 또는 보험감독 기관에 의하여 당해 기간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고 판정된 자여야 했다. 한편, 5년 동안 생명보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정

부 또는 정부의 출자 및 출연을 받은 자로부터 자본금의 출자 또는 기금이 납입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였다.

실제로 국내 지점 설치를 원하는 외국 보험회사들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요건 및 신청 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와 우리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 허가여부 결정이 가능하였다.

납입자본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지점을 설치하는 외국보험회사들은 20억 원 이상의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 금액 중 절반을 원화, 본국통화, 우리나라 국·공채로 한국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에 예탁하도록 하였다.

〈표 II-1〉 1차 보험시장 개방

구분	주요 내용
198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내국인에 대한 영업 허용 •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미군과 미군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영업 허용, 외국인 대상 대리점 영업만 가능
198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1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 방한 • 외국 보험회사들의 지점 영업환경 개선과 보험시장 개방 요구
1980년대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례 한·미 경제협의회, 1, 2차 실무자 협의회 • 미국 정부의 생명보험 시장 개방 요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풀(pool)제도 폐지 요구 및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즉시 참여 등 요구
1980년대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말까지 미국 생명보험회사 1개 지점설치 허용 및 추가 개방 논의 • 1986년 7월까지 미국 2개 손해보험회사 화재보험 풀(pool) 참여

2. 한미 통상마찰 추이와 배경⁸⁾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던 1982년 당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시장개방 요구 품목 리스트를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미국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를 무기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은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1980년대 재정적자 심화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고달러 정책에서 저달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를 이어나갔다.

19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는 자국시장에 비해 개방의 정도가 미흡한 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GATT를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쌍무적 접근법을 채택한 결과이다. 「미국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는 한국시장의 접근과 관련하여 장애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미국의 관련 업계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청원하거나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체발의하여 조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보험산업에 대한 미국의 「미국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 제소는 1979년 American Home Insurance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1985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직접 제소하기도 하였다.

1979년 미국 보험회사 American Home Insurance는 한국정부가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이유로 한국을 「미국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의거하여 제소하였고 이후 1년간의 협상결과 한국정부는 동 회사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1985년 7월

8) 왕윤중·라수엽(1997) 참조.

미국은 한미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생명보험 시장의 개방 및 화재보험 풀(pool) 제도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9월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보험시장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당시에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문제가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301조를 통해 제소하게 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한 한국 보험시장 301조 조사는 1986년 8월 종결되었으나 1988년 3월까지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보험시장은 더욱 개방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보험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협상으로 이어졌다.

3.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산업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까지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 정책 하에서 6개 회사들로 구성된 생명보험산업은 고도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인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개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시장 개방이, 이미 추진되었어야 마땅한 보험산업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시장 개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생명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⁹⁾

대외개방이 있기 전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기형적 성장의 배경에는 강한 요율규제와 상품규제로 모든 보험회사가 유사한 성격의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대량으로 증원된 저능률 모집인들

9) 이경룡(1990).

에 의한 강권, 강매 방식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내자 동원 수단으로 보험산업을 이용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자산 확대에만 집중하였고, 계약내용이 단순하여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잘 팔 수 있고 모집조직의 교육도 불필요한 단기저축성보험 위주 상품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보장성보험의 판매는 뒷전이었다. 그리고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필요하거나 기업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것이 우선시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험상품의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생명보험요율은 1960년대 이후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해왔다. 예정이율은 전사가 동일한 이율을 사용하였고 금리변동 시마다 변동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예정위험률은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아 예정사망률마저도 1988년에 와서야 경험통계를 사용하게 되었다. 사업비는 과도한 영업비 지출로 손실이 발생하여 계약자 배당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험시장 개방 이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요율, 상품, 판매채널, 자산 운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규제 속에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시장의 개방은 요율,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감독제도 전 부문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충분하였다.

4.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1980년대 초반까지는 보험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는 시장개방은 외국 보험회사들에게 자국 보험회사들이 지배되는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최대한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성숙한 상황에서 개방을 하자는 원칙이 고수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외적인 개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먼저 외국 보험회사들에 대한 개방을 시작하고 자국 보험회사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는 추후에 시

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방향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외국 보험회사들이 영업에 있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였으며, 결국 정부는 순수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설립기준 완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동시에 대외개방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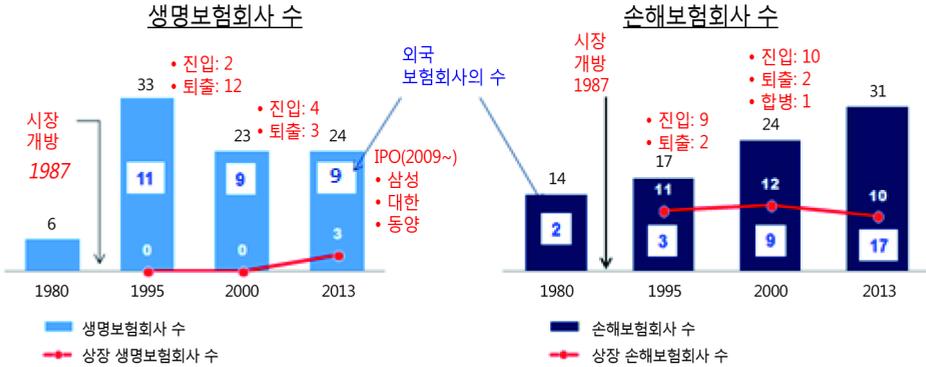
국내 보험회사의 진입장벽 완화는 1986년 5월 30일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허가 기준을 발표하고 이후 1987년 12월 29일에 지방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한 허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허가 기준에 따라서 1989년과 1990년 대신생명, 태평양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 한국생명, 신한생명과 같은 전국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1983년과 1993년 사이에 지방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부산생명, 대구생명, 광주생명, 대전생명, 중부생명, 경남생명, 전북생명, 충북생명, 한일생명이 설립되었다.

대외적인 시장개방의 경우 한미 통상협상의 타결로 미국의 라이나 생명보험 회사(Life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 LINA)와 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 컴파니(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 ALICO)의 지점 설치가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립 허가 기준에 의거하여 1987년 4월 22일과 5월 18일 각각 허가되었다. 이후 아플락생명, 조지아생명, 아메리카생명의 국내 지점설치가 허용되었으며, 동부애트나생명, 동양베네피트생명, 코오롱메트생명, 고려씨엠생명 등의 합작회사도 나타났다. 또한 한국푸르덴셜생명과 네덜란드생명, AGF생명과 같은 현지법인도 출현하였다.

대내외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들은 내국 보험회사들에 비하여 영업 경쟁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시장개방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1992년 6월 30일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규제완화의 내용으로는 보험시장 개방과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 상품개발의 다양성 확보로 선택의 기회 확대, 무배당보험상품 도입 허용, 상호주의 차원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부동산 취득 제한적 허용, 여러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과 브로커(Broker) 제도 도입, 외국 보험회사의 협회 정회원 가입 허용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II-1〉 보험회사의 수 추이



〈표 II-2〉 외국계 보험회사 점유율 추이

보험종류	생명보험 (단위: %)			손해보험 (단위: %)		
	1995	2000	2013	1995	2000	2013
상위3개사	61.3	79.9	49.6	57.4	68.0	71.0
기타 국내사	38.3	14.4	33.5	35.8	27.9	24.8
외국사	0.3	5.7	16.9	0.4	0.4	2.1

자료: 보험개발원.

자료: 보험개발원.

5.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보험시장 개방이 기존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한·미 통상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시장 개방 이후에도 기존 보험 회사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¹⁰⁾ 오히려 신규 보험회사들과의 외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단기적

10) 이경룡(1990).

외형확장에 열을 올리면서 기대했던 수준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국내보험회사들은 기존 보험회사의 단기 외형성장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오히려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보험시장 개방과 함께 감독정책의 변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독정책이 부재하여 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수만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 한미합작사들도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였으나 몇몇 보험회사들은 단기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에 치중한 상품의 판매에 집중하고 양질의 모집사원을 채용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취했던 사례도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등 다른 주요국들의 요구에 의한 보험시장 개방 이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기대했던 만큼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없었고 이는 보험시장 개방과 더불어 자율경쟁 시장에 적합한 규제의 변화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시장 추가개방

우리나라 정부는 1995년 3월 29일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996년 12월 12일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OECD 정회원이 되는 과정에서 OECD는 우리나라 보험시장 자유화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고 Cross-border 확대와 재보험 자유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1995년 11월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Cross-Border 허용종목을 1997년 1월까지 확대하고,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를 1997년 1월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중개인제도를 생명보험은 1998년 4월까지, 손해보험은 1997년 4월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험중개인제도를 대외개

방하며, 재보험시장은 1997년 4월까지 자유화하고,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을 1998년 4월까지 대외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보험시장 개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97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일부 대기업 파산 등으로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하면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다. 생명보험산업은 해약환급금의 급증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이 부실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보험감독기구인 보험감독원은 지급여력이 부족하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18개 생명보험회사, 2개 손해보험회사, 2개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재산, 채무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이후에는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된 국제생명, BYC생명, 태평양생명, 고려생명 등 4개 보험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유계약 및 우량 자산을 삼성, 교보, 흥국, 제일생명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산업의 1차 구조조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14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 생명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당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으로 부실이 심각하였던 대한생명은 국영보험회사로 전환되었고 2000년 한국생명, 조선생명, 동아생명, 태평양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 등이 매각 합병되었다. 두원생명은 대한생명으로 계약이 이전되고 허가가 취소되었다. 1998년에는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의 합병이 이루어졌고 2001년에는 대한, 국제, 리젠트 등 3개의 부실한 손해보험회사가 정리되었다.

외환위기를 통한 두 차례의 보험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1998년에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5월), 외국환 거래 자유화 방안 발표(6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7월) 등 외국자본의 국내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보험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또는 M&A 방식을 통한 외국회사들의 국내

보험시장 진입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인식되었던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 : Economic Needs Test)가 폐지되면서 외국보험회사들이 국내 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표 II-3〉 2차 보험시장 개방

구분	주요 내용
OECD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3월 29일 OECD 가입 신청, 1996년 12월 12일 OECD 가입 • 1995년 11월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1월까지 Cross-Border 허용종목 확대 - 1997년 1월까지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 폐지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생명보험 1998년 4월, 손해보험 1997년 4월) - 보험중개인제도 대외개방 - 1997년 4월까지 재보험시장 자유화 - 1998년 4월까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개방
외환위기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IMF 구제 금융 신청 • 보험감독원 18개 생명보험회사, 2개 손해보험회사, 2개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 명령 • 4개 보험회사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업정지조치(1차 구조조정) •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 • 1998년 외국자본의 국내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외국인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5월) - 외국인 거래 자유화 방안 발표(6월)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7월) -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 폐지

7. 보험시장 개방의 결과와 평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외환위기를 촉매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환위기에 따른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은 1980년대에 이루어진 1차 개

방¹¹⁾ 이후에도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며 질적인 향상 노력을 등한시하였던 결과라는 점은 1차 개방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이 개발되고 판매채널의 전문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Boonyasai(1999)는 1990년대 자유화가 진행된 한국,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태국의 보험시장 자유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타이완과 태국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과 필리핀의 보험시장 자유화가 보험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보험시장의 경우 본격적 시장개방이 시작된 1989년부터 실질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3년까지는 생산성 증가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규제완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생산성 증가가 나타났으며 보험시장 자유화가 경쟁을 확대시킨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추가 시장개방의 성과가 1차 개방 당시에 비하여 좋게 나타난 것은 시장개방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험요율 자유화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추진되었으며, 변액연금 도입을 통한 판매상품 다양화와 대리점 제도 도입,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판매채널에서의 다변화도 추진되었다. 또한 지급능력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예금보험이 신설되는 등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독 정책의 변화도 수반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1)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이루어진 시장개방을 의미함.

Ⅲ. 금리자유화와 요율자유화

1. 금리자유화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1년 경제개발계획 시행에 따른 내자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경제발전에 초석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보호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육성의 일환으로 일반은행의 국유화가 추진되었으며, 특수은행과 지방은행도 설립되었다.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저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 자본금 증자 및 통합 등의 보험산업 개편도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의 금융산업 개입과 규제는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양적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산업 개입과 규제는 금리구조와 자금흐름의 왜곡 및 금융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금융업권별 분업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업권별 다른 금리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금융구조의 취약성을 확대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금융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융산업 자유화 및 개방의 필요성이 금융산업 내부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자유화 논의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급증함에 따

라 금융시장이 글로벌화되었고 금융시장 자유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니즈도 확대되었다.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다른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도 더욱 커졌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커졌다. 금융시장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deregul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동시에 금융기관 건전성을 감독하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감독기구의 필요성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자유화 개념은 Ronald McKinnon과 Edward Shaw(1973)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그들은 금융자유화를 신용의 수요 공급과 이자율이 시장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궁극적인 금융자유화는 정부가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정부의 신용시장 개입과 관련한 규제 철폐, 금리 규제 철폐,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철폐, 은행 자율성 확보, 은행 사유화 허용, 국가 간 자금 거래의 자유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금융자유화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84년 금융기관 대출금 차등금리제를 도입하면서 금융자유화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엄격히 규제하였으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금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정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였으며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도 금융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유화는 금리의 자유화, 정책금융의 축소,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규제완화, 금융기관 경영의 자유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금리자유화는 보험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보험요율 자유화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는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영기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금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고도 성장기에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컸으며,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과다로 금리경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8년 3저 현상¹²⁾을 계기로 금리자유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으나 시중금리 불안정,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금리자유화 조치는 사실상 철회되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화 확대로 금리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8월 부분적 금리자유화 조치가 발표되었으며,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 여신금리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하고 수신금리는 신중히 자유화를 추진하며,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의 순서로 자유화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CD, 회사채, 기업어음 등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기에 자유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계획에 의하여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은 자문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3단계에 걸친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결과 1997년 7월까지 재정자금 대출금리와 요구불예금, 7일 미만의 저축성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금리가 자유화되었다. 4단계 조치 시행 이후 2004년 2월 요구불예금과 7일 미만의 저축성예금금리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모든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금리자유화는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금리자유화를 통하여 시중금리가 실제금리에 다가가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과 단자회사들이 고금리 상품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고금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보험수요 이탈이 예상되었다. 이때까지도 우리나라의 보험상품은 단기지

12)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의미함.

축성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가중되었다. 더욱이 보험상품은 부가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리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금리자유화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영업위축과 유동성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었고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 금리자유화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금융회사 간 고금리 경쟁이 유발되면서 타 금융권 대비 금리 열세였던 생명보험회사들은 대규모 해지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고이율 확정금리형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고위험·고수익 자산 운용을 추진하면서 대응하였다. 그러나 1987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부실채권이 급증하였으며, 이것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부실로 이어져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시행과 저금리 환경에서의 금리자유화로 급격한 시중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험회사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편, 금리자유화 추세는 보험상품 가격인 보험요율 자유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기관 간 가격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상품이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요율 자유화가 요구되었다. 보험요율 자유화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하, 계약자 배당률 인상 등 가격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격경쟁이 보험회사의 경영기법을 고도화시키고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안은 1993년 발표되었으며, 1994년 4월부터 보험종목별로 차등을 두되 거의 모든 종목을 1997년까지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생명보험 보험료는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과 보험계약자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요율 자유화 이전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 왔고 보험계약자 배당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보험상품 가격을 규제하고 경쟁을 억

제하여 왔다. 손해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풀(pool), 특수물건 풀(pool) 등과 같은 협정행위가 존재하였으며 재보험에 대하여서도 재보험 교환규정¹³⁾을 두는 등 손해보험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가격 규제가 이루어졌다. 1994년부터 추진된 보험요율 자유화 방안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과당경쟁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실화 및 요율덤핑이나 부당한 요율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3. 보험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금융산업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보험요율 자유화에 대한 문제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요율 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비교적 영향이 적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1993년 12월 10일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정요율체계를 범위요율체계로 전환한 이후에 자유요율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 일반손해보험

보험요율 자유화는 자유화 과정 가운데 시장개방과 다른 규제완화에 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매우 크다.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에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며, 적정한 보험상품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혼란이 초래되고 시장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3) 원수보험회사의 과다한 위험 보유로 지급능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시키고 국내 위험 보유능력을 극대화하여 불필요한 재보험료 국외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재보험과 관련한 제반 규제사항을 규정한 것을 의미함.

정부도 보험요율 자유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고 보험회사들이 적정한 시장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보험요율 자유화 계획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단계적인 보험요율 자유화 계획은 일반손해보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커 가격 자유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도 사업비, 신계약비 산정 등 거쳐야 하는 과정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상대적으로 일반손해보험이 가격산정에 있어서 명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1994년 4월 1일부터 선박보험, 운송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대한 일반손해보험의 범위요율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4월 1일부터는 수출 및 적하보험, 일반화재보험 등을 포함해 이전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손해보험 종목을 대상으로 한 범위요율제도가 실시되었다. 1996년 4월 1일부터는 선박보험, 운송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대한 자유요율제도가 실시되었고, 1997년 4월 1일부터 수출 및 적하보험, 일반화재보험 등에 대한 자유요율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1996년 4월 1일부터는 주택화재보험, 보증보험, 가계성 특종보험의 범위요율제가 실시되었으며 1998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자유요율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 4월부터는 실질적인 요율자유화 효과를 유도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보험가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에 대한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순보험요율 자유화 요구가 더욱 높아졌으며, 2002년 4월부터 회사별 경험실적을 반영하여 각 회사별로 순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순보험요율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표 Ⅲ-1〉 일반손해보험 자유화 일정

구분	자유화 단계	
	범위요율	자유요율
• 선박, 배상책임 등 기업성 특종(13종목)	94년 4월	96년 4월
• 화재, 수출입 적하 및 가계성 보험(총 18종목)	95년 4월	97년 4월
• 할인할증률	94년 4월	-
• 가입자 특성요율	95년 4월	-
• 기본보험료	96년 4월	98년 4월

자료: 손해보험협회(2006), 『손해보험협회 60년사』.

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1994년 이전까지 모든 보험회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협정요율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각 요율요소별 범위요율제가 시행되었으며, 1998년 8월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이 확대 시행되었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부가보험료의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자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부가보험료를 차별화하고 사업비를 감축하는 등 경쟁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 경쟁을 확대시켰다. 2000년 8월부터는 상품자유화가 시행되어 각 회사별 고보장상품 개발 및 판매 경쟁이 촉발되었다. 또한 2001년 1월에는 10인승 이하 승합차(현행 다인승승용), 2001년 4월에는 영업용 및 기타보험(외화표시, 운전자, 농기계,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취급업자보험)의 순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되었으며, 2001년 8월부터는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이륜차보험포함)의 순보험료 자유화가 실시되어 모든 자동차보험 요율이 자유화되었다.

〈표 Ⅲ-2〉 자동차보험 자유화 일정

94년 4월	95년 4월	96년 4월	97년 4월	98년 4월
할인할증(범위)	가입자 특성(범위)	기본보험료(범위) 할인할증(자유)	가입자 특성(자유)	기본보험료(자유)

자료: 손해보험협회(2006), 『손해보험협회 60년사』.

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요율자유화는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요율자유화와는 달리 영업보험료 형태가 아닌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자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4월부터는 예정유지비가 자유화되었다. 보험종목을 순수보장성과 비순수보장성으로 구분하고, 순수보장성의 경우 5% 이상에서, 비순수보장성 중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1% 이상, 5년 초과인 경우는 2% 이상에서 예정유지비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4월부터는 예정위험률의 범위요율제가 실시되었다. 표준위험률을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위험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보험회사 경험통계가 충분하다면 표준위험률의 15% 범위를 초과하여 예정위험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예정위험률이 자유화됨에 따라 계약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보완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예정위험률의 범위요율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험률에 대해서는 보험료적립금 산출 시 보험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위험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 4월에는 예정이율의 범위요율제가 도입되었다. 금리고정형 상품인 경우 예정이율을 기존 연 8% 고정이율에서 연 7.5%~8.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연동금리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이율의 120% 이하, 공시기준 이율의 90%~110%, 회사의 약관대출이율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4월부터는 예정위험률¹⁴⁾ 가운데 참조순위험률¹⁵⁾을 보험회사 경험실적을 반영한 자사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시에 그 동안 유지되어 온 범위요율제도를 폐지하였다. 예정이율은 완전자유화가 되었으나 보험

14) 예정위험률은 참조순위험률과 기타 위험률로 구분됨.

15)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예정이율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적용한 표준해약환급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계약비가 자유화됨에 따라 유지비, 수금비를 비롯한 모든 예정사업비¹⁶⁾가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예정신계약비는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를 도입하여 표준신계약비율¹⁷⁾을 초과하여 신계약비를 부과한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을 적립하고 해약 시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자유화 일정

자유화 내용		자유화 단계		
		고정요율	범위요율	자유요율
보험요율	예정위험률	62년 4월	-	97년 4월
	예정이자율	62년 4월	98년 4월	2000년 4월
	예정사업비(총한도)	62년 4월	81년 4월	2000년 4월
	신계약비	62년 4월	81년 4월	2000년 4월
	유지비	62년 4월	81년 4월	94년 4월
	수금비	62년 4월	81년 4월	81년 4월
계약자 배당	사차배당	84년 4월	91년 4월	95년 4월
	이차배당	88년 4월	91년 4월	97년 4월
	비차배당	-	-	99년 4월

자료: 생명보험협회(2010), 『생명보험협회 60년사』.

4. 요율자유화에 대한 평가

요율자유화는 보험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선택권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감독측면에서는 고정요율제보다

16) 예정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됨.

17) 금융감독원장이 책정함.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경쟁적 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적정한 가격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소비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나 요율자유화 과정에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요율 자유화는 시장에 주는 충격과 국내 보험회사들의 요율산출 및 인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범위요율제도가 실질적인 가격자유화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더욱 가격자유화의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는 시장 진입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시장 경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2000년 1월 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의 수는 이전의 12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났다. 또한 가격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격경쟁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가격의 인하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었으며, 손해율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분화된 리스크를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인수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 담보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지나친 가격 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매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2000년 이후 나타난 자동차보험회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통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생명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2007)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가격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생명보험 가격지수가 예정사업비 자유화(2000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가격자유화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격지수 상승은 해약환급금 감소 및 종신보험 판매증가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 하락과 보장성보험 비중확대에 따른 사업비율 상승에 기인한 것이지만 보험가격 자유화가 가격정책 측면에서 보험가격

18) 이순재(2009) 참조.

인하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보험가격 자유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간 예정이율과 예정위험률의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험회사 간 역경쟁으로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져 보험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향후에는 경험위험률 사용 확대와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도입 등으로 보험가격 차별화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자동차보험 산업의 보험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인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한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가 형식적으로는 완료되었으나 자동차보험이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완전하게 자율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자동차보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민영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산업에 있어서 자율자유화가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가격자유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등한시 할 수는 없으나 자율자유화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율자유화의 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유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V. 규제완화

1. 시장성숙모형과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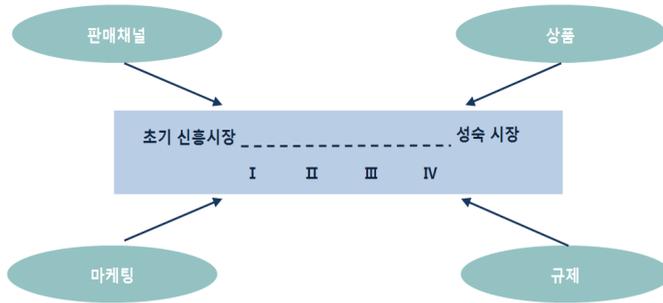
Berlin(2010)은 본인의 연구에서 보험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상품, 판매채널, 감독규제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시장성숙모형(Market Maturity Model)을 제시하였다. Berlin(2010)의 시장성숙모형은 보험시장 발전단계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통합시장(Integrated Market)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별 발전과정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흥시장 단계의 국가들은 베트남, 인도 등이 있으며, 성숙시장 단계로는 호주, 미국, 영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3단계 정도의 성숙된 시장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들 모형은 각국의 보험시장 성숙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역사적 성숙과정을 구분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개방과 1990년대 시작된 자율자유화로 점진적인 자유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기간 동안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든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든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과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성숙단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신흥시장 1, 2단계(Phase I, II)에서의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과 같은 단순한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단계의 보험소비자들은 사망 등 보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망보장 기능을 최소화한 생사혼합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시장 단계를 벗어나면서 점차 보험소비자들은 사망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보장성 보험 수요가 증가한다. 신흥시장

2단계(Phase II)에서의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 증가는 투자형 상품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면서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이 나타나게 되며,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 니즈가 사망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성숙단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 등장하고 변액보험 최소보증 옵션과 같이 주계약보다 가치 있는 특약을 제공하는 상품도 출현하게 된다. 또한 신상품 개발 주기도 빨라진다.

〈그림 IV-1〉 시장성숙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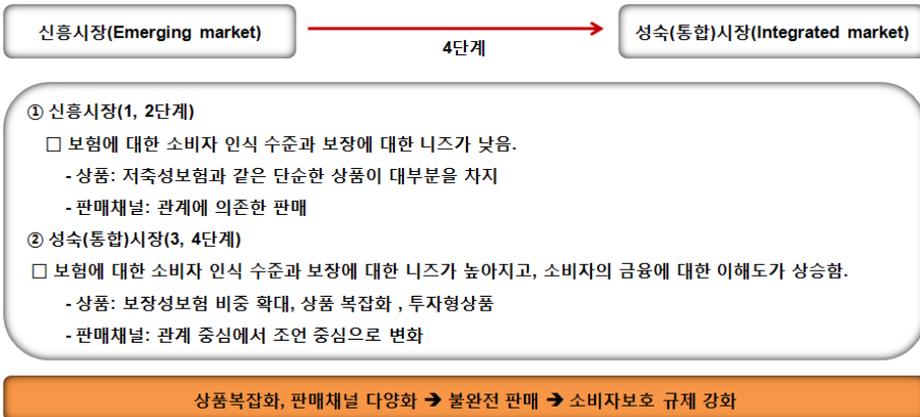


자료: Berlin, J. (2010).

신흥시장 단계(Phase I, II)에서 판매채널은 설계사와 같은 전속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후 3단계(Phase III)에서는 독립설계사나 중개인 등으로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며 4단계(Phase IV)에서는 방카슈랑스, 재무설계사, 인터넷, 홈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채널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판매채널이 전속채널에서 독립채널로 변화하는 이유는 전속설계사 인력들이 성숙해가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더 많은 자율성과 보상,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소비자들도 더 많은 조언과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제도 변화, 비용증가, 새로운 기술의 발견, 신상품 등은 새로운 형태의 판매채널 없이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신흥시장 단계에서는 관계 중심의 보험상품 판매에서 조언 중심의 판매로 전이하게 되며, 이는 최종 소비자와 상품 공급자의 거리를 멀게 한다.

감독규제는 시장이 성숙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신흥시장 단계에서 보험회사들은 대규모 전속설계사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며, 보험상품의 판매는 설계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서의 관계에 의존한 판매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해 가면서 회사는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보험상품 판매자들은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절한 상품판매에 대한 민원이 감독당국에 제기되게 된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잘못 이해하고 구입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하며 이러한 현상은 은행이나 다른 채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감독규제의 출발은 소비자에게의 부적절한 판매의 결과물이다. (mis-selling) Phase III, IV 단계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감독규제는 보다 엄격해진다. 영국의 경우 1988년 정부는 보험판매인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보험판매시 복잡한 세일즈 프로세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속설계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시장이 성숙할수록 감독규제의 축은 소비자 보호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IV-2〉 시장성숙모형과 규제완화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의 변화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함께 변화하는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강화는 진입규제나 요율규제 완화와 모순되는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2. 보험산업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

보험산업은 사망, 질병, 연금 등을 취급하는 생명보험과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보험산업 고유의 업무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타 금융산업과의 영역 충돌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또는 금융산업 간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영역 다툼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장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이의 업무영역 경쟁과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타 금융권과의 경쟁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금융산업 간 경쟁

보험산업은 보험상품 가운데 저축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은행 업무와의 갈등의 소지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 금융산업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소비자들의 위험전가라는 보험산업 고유의 업무에 집중해 왔고, 업무영역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저축성 상품의 경우 내자 동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간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이로 인한 영역다툼의 가능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허용 여부는 1990년대 초 현안으로 대두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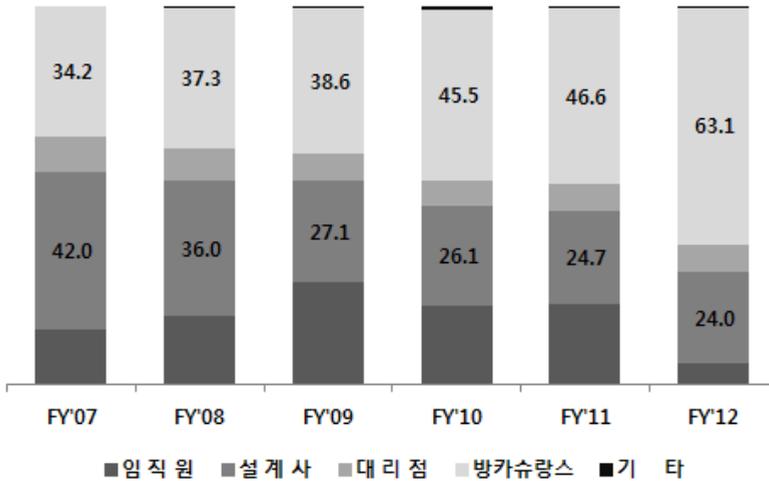
나 당시 금융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방카슈랑스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0년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3년 8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저축성 가계보험을 시작으로 2007년 4월 전 보험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확정하였으나 보험업계는 보험시장의 잠식과 불공정 판매, 금융산업의 은행 집중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2003년 9월부터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어 저축성보험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방카슈랑스 시행종목과 일정을 전면 조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5년 4월부터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보험, 2006년 10월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 상품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4월 개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전면도입은 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을 야기하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주장으로 보험업계와 학계는 방카슈랑스 4단계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였다. 이에 2008년 2월 21일 국회 재경위는 4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을 철회하였다.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확대되었으며, FY2012 2/4분기에는 약 70%의 점유율을 넘어서 생명보험 판매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8월 도입된 자본시장 통합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권역 간 업무영역 문제를 확대시키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한층 치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생명보험 중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자본시장 통합법 규제범위에 포함되면서 규제 관련 제도가 복잡해졌다. 이후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펀드 및 수익증권 판매 허용과 2006년 4월 동 법의 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펀드 및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제도 도입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자문, 일임업과 함께 자금이체업무를 허용기로 하였다. 그러나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2010년 보험업법 개정에서 자금이체업무 허용은 제외되었다.

〈그림 IV-3〉 생명보험 채널별 비중 추이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나. 생·손보 간 업무영역 논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에 집중하던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은 1970년대 후반 가계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 영역인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한 뚜렷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손보 간 업무영역의 혼란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질병보험의 경우 성격상 생명보험 분야에 가까우나 손해보험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어 생·손보가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과 업무영역 중복 방지를 위하여 생명보험 사업자는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은 질병보험을 둘러싼 생·손보 간의 영업 다툼은 1997년 6월 금융개혁위원회가 상해, 질병 및 장기간병보험의 생·손보 겸영의 허용을 권고하고 이후 상품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생·손보 모두 상해, 질병보험을 주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생·손보 간 업무영역 논란은 2000년 초반 실손의료보험 취급과 관련한 논의로 이어졌

다. 결국,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생명보험의 경우 제3보험상품에 대한 실손보상이 허용되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제3보험에 대한 15년 만기제한을 폐지하여 질병사망 특약 만기를 80세, 질병 사망보험금 한도를 개인 당 2억 원 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근본적인 생·손보 간의 영업 다툼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장기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초 손해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장기보험 개발 및 판매 움직임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의 반발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시작된 장기손해보험 논란은 손해보험회사들이 1986년 8월 장기보험 인가를 신청하면서 부각되었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논쟁만 2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1988년 생·손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손해보험 업무영역 확대가 추진되었고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가 허용되었다.

3. 보험상품 다양화

시장개방과 자율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새로운 보험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에 대한 감독기관의 인가가 요구된다. 보험상품 인가제도는 1988년 이전 사전인가제도 이후 점진적으로 간소화되었다. 1988년 신고 후 판매(File and Use), 판매 후 신고(Use and File)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3년에는 자유상품, 보고상품, 신고상품 등 판매 후 보고체제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고불요상품이 확대되는 등 상품 개발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이러한 인가제도의 간소화는 보험회사들이 더욱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되었으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보험상품 다양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 6월 장기손해보험의 통폐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장기 화재보험, 장기상해보험, 장기종합보험 등 3가지 종류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후 다양한 상품을 요구하는 보험소비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1986년 3월에는 장기운전자복지보험, 복지상해보험 등을 손해보험 업계 공동으로 상품화하고, 운전자 관련 보험과 저축성보험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활발한 장기손해보험 상품 개발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을 침범했다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잠시 주춤하였다.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고유의 영역이라는 주장과 장기손해보험이 생명보험회사의 고유영역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손해보험회사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이와 같은 생·손보 간 영역 다툼이 계속됨에 따라 1985년 3월부터 3년간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1988년 3월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생·손보 간 영역 다툼은 다소 진정되었다.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기준」 제정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 상품 판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이 출현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장기손해보험은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1990년 고수의 금융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장기저축성보험 개발이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2000년 이후 손해보험회사들의 상품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생·손보 간 업무영역 다툼이 상당부분 마무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보험소비자들의 장기상품에 대한 니즈가 동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저축성보험 상품의 니즈가 급증한 것은 장기 저축성보험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저축성상품에 비하여 보험회사들의 저축성보험이 상대적인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축성보험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금리경쟁력은 방카슈

량스 도입 이후 더욱 부각되었다. 2012년 생명보험 가운데 저축성보험의 비중은 약 65.9%이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약 18.2%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축성보험의 급성장은 2000년대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산업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험상품 다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으로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니즈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보험산업 자유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상품개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많은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축성보험 쏠림현상 해소를 위하여 다른 보장성 상품에 대한 판매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IV-4〉 장기손해보험 성장률 및 비중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1992년에는 무배당보험 상품이 도입되었다. 국내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보험 회사들은 시장 진입 초기에 취약한 배당경쟁력으로 인해 내국사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장성보험 등에 특화할 수 있도록 무배당보험 상품 도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

는 1992년 6월 30일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을 통하여 무배당 상품 도입을 허용하였다.

2000년 금융감독위원회는 EU식 지급여력 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전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판매에 따른 이익의 배분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차등·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지급여력비율이 8% 이상인 경우 주주지분의 상한을 15%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지분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주지분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10%로 조정하였다. 현재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무배당보험의 비중은 90%에 이를 정도로 유배당보험보다는 무배당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1994년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의 판매가 가능해 졌다. 정부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을 고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투신사,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서 세제적격 연금의 판매를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졌으나 그 내막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제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금융저축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과 장기성 저축상품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조달 및 운용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2001년 5월부터는 변액보험 판매가 허용되어 무배당변액종신보험이 판매되었다. 2001년 1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금저축보험이 도입되었고, 2001년 2월에는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다양한 특약보험상품 및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도 판매되었다. 2003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었으며, 2003년 8월부터는 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등장하였고, 2008년 9월부터는 통합형 보험의 판매가 개시되었다. 2003년 이전까지 생명보험회사는 정액보상 의료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의

료보험 상품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손해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체보험은 법시행과 동시에, 개인보험은 법시행일 2년 이후부터 허용되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질병사망특약 등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을 생·손보가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명보험 영역에 속하는 일정범위의 보험종목을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퇴직보험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이며, 보험회사의 퇴직보험은 1999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2011년부터는 퇴직보험의 추가 납입이 금지되었으며 사실상 퇴직보험제도는 2010년 말로 종료되었다.

〈표 IV-1〉 신보험상품 도입 추이

보험상품	시기
무배당보험	1992년
제3분야 생·손보 겸영	1997년
변액보험	2001년
자산연계형 상품	2003년
생명보험 실손보험	2003년

4. 판매채널 다양화

우리나라의 초기 판매채널은 보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채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이 다양화되어지고 판매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IT기술과 관련 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판매채널 다변화가 추진되었으며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중심의 판매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전속설계사 채널의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은 1983년 11월 처음으로 보험대리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보험대리점은 1개 보험종목에 1개의 보험회사와의 계약만이 가능하였다. 이후 1994년 4월 1일부터는 복수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일 보험종목에 대하여 2개 보험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1997년 3월 31일에는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독립대리점제도가 시작되었다. 독립대리점은 한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취하였다. 독립대리점제도가 시행되면서 판매채널 경쟁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독립대리점제도 시행 이후 기존 보험대리점 수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1999년 3월에는 6만 3,686개에 이르던 보험대리점이 2008년 12월에는 4만 6,420개로 27.1%나 줄어들었다. 반면, 독립대리점인 법인대리점 수는 같은 기간 965개에서 3,779개로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독립대리점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모집사용인 100인 이상의 대형 GA(General Agency)는 약 200여개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보험중개인제도의 경우에는 1977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여건 미비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96년 12월 31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1998년 4월 1일부터 인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2월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다른 채널과의 중복 및 여건 미성숙 등으로 보험중개인의 영업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보험산업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전통적 판매채널에서 벗어나 통신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판매채널의 비용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998년 3월 9일에는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이 제정되어 정보통신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 시 모집자의 자격요건, 모집자에 대한 교육, 아웃바운드영업(Outbound Telemarketing)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00년 3월 10일에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아웃바운드영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2003년 5월 29일 개정된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신원확인 가능한 경우 통신판매 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2003년에는 단계적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이 시행되었으며, 1단계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도입 당시부터 금융권역 간 참여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기존 설계사들의 생존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제도 도입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5% 규제¹⁹⁾와 교차판매²⁰⁾ 허용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5년 4월에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²¹⁾의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 CI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확대가 예정되었으나 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철회되었다.

19) 금융기관대리점의 1개 보험회사 상품판매액을 동 대리점 전체 판매액의 25% 이내로 제한함.

20) 전속설계사들이 생·손보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음.

21)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함.

〈표 IV-2〉 보험산업 판매채널 관련 변화

연도	주요 내용
1960년대 이전	• 직급위주의 판매제도
1960년대	• 생명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직급제도 대리점, 보험계약법, 보험 모집 단속법
1970년대	• 직급제도, 손해보험 모집인 제도, 보험모집인 등록시험
1980년대	• 겸영대리점, 대리점허가제
1990년대	• 복수대리점, 독립대리점, 중개사제도 도입
2003년	• 방카슈랑스 도입 및 영업규제 신설
2007년	• 교차모집제도, 마트슈랑스 등 신채널 확대

주: 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보험업법 개정 시 보완 또는 추가되었다는 의미임.

자료: 안철경·이경희(2011. 11),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p. 36 표 인용.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변화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과 관련한 감독규제는 점차 상품개발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의 종류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제의 변화는 특히 2000년 변액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험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보험시장의 성숙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2000년 감독당국은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하게 되었다. 변액보험 이전에도 무배당 보험, 개인연금 보험 등의 신상품이 허용된 바 있으나 이들 상품에 대한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험시장 발전에 따른 보험상품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여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려운 변액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함에 따라 감독당국도 소비자 보호

를 위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불완전 판매 방지와 판매채널의 전문성 함양 등이 강화되었다.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부터 존재하였으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는 미진하였다. 2000년 8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회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 안내서, 보험약관, 그리고 보험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정보인 예정이율 및 예정위험률을 공시하게 되었다. 2002년 1월에는 예정사업비율도 사업비 지수방식을 이용하여 공시하였으며, 9월에는 보험회사가 홈페이지에 보험가격산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으로 비교공시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단체 및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보험료 등의 가격정보를 비교 공시하였다. 2007년에는 변액연금보험의 투자원금 공시를 의무화하였고, 2012년 10월 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상에 변액저축성보험 비교공시 메뉴를 신설하였다.

변액보험 판매 이후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2005년 6월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대형화된 일부 법인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와 무리한 영업실적 경쟁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감독이 강화되었다. 2011년 8월에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자 나이,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 투자가 적합한 사람에게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원칙이 도입되었다.

〈표 IV-3〉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변화

연도	구분	주요 내용
2003	보험안내자료 구체화	•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 해약환급금,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등
2003	상품공시제도	•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 공시 제고를 도입하여 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 지원
2003	불완전판매 등 금지행위	• 승환계약 행위를 구체화 • 특별이익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과징금 병과 등 부정행위를 규제
2006	상품공시제도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특별계정 투입금액 공시 • 상품설명서 제도 도입
2008	상품공시제도	• 보험설계사 전속제도 예외 규제 통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
2009	상품공시제도	•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 실손의료보험 연령별 보험료 비교 공시
2010	불완전판매 등 금지행위	•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따른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 공시 확대
2010	보험계약자의 구분	• 불완전판매 행위 규제
2010	설명 의무	• 일반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로 구분하여 소비자보호 수준 차등화
2010	적합성의 원칙	• 보험계약 체결 시 일반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판매 또는 권유
2010	광고규제	• 채널의 허위 과장광고 규제 근거 마련
2010	중복계약체결 확인업무	•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
2010	보험설계사 교육의무	•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의 피해 방지 위해 상품, 윤리 및 법규 등 설계사 보수교육 의무화
2010	보험대리점의 규제 강화	• 법인대리점의 업무범위를 보험모집 및 계약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 중심으로 제한 •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화된 의무 적용

주: 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보험업법 개정 시 보완 또는 추가되었다는 의미임.

자료: 안철경·이경희(2011. 11),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p. 36 표 인용.

6. 시사점

1980년대 시장개방 이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규모 설계사를 통한 단기저축성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한 영업이 이루어졌고 시장성숙도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흥시장 단계인 Phase I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관심이 경제 발전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금융시장의 외형적인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었다. 그러던 중 보험산업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장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험시장 개방이 진행되고 보험요율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으며, 또한 다양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채널도 다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성숙도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발전과정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신흥시장 단계 Phase I에서 벗어나 점차 성숙된 시장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중심의 판매채널로 변화하였으며 비전속 판매채널이 확대되었다. 또한, 판매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규제완화와 개선도 이루어졌다. 한편, 보험상품 자율성 확대와 관련 규제완화 추세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성숙한 시장일수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험시장도 점차 성숙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성숙도형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완전한 성숙 시장의 단계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인 신흥시장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다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V. 자산운용과 지급여력 규제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금융기관 건전성과 관련한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비하여 건전성에 대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 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자산운용의 결과를 경쟁력으로 가지기를 원하였고, 결국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금융기관 건전성과 관련한 규제의 핵심은 자본규제를 통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도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너무나 강한 자본규제를 가할 경우 금융기관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금융기관이 가지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장 원리가 작용하도록 하면서도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자본은 적절한 수

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특성상 규제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경쟁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고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로 관련 규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명확한 업무영역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고, 통일되고 공통된 자본규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에는 자본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로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등을 고려한 'BIS 기준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총자본비율의 8% 정도를 적용받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란 재무건전성 지표를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유동성 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금융위원회의 권고 비율은 최소 150% 이상 유지이다. 보험회사도 지급여력(solvency margin)에 따른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적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계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표 V-1〉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구분	주요 내용
은행	• BIS 기준 자본규제: 총자본비율의 8%
증권	•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유동성 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 최소 150% 이상 유지 권고
보험	• 지급여력에 따른 자본규제: 보험업법 100% 이상 지급여력비율 유지, 금감원 150% 이상 유지 권고

2.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건전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자산운용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배경도 이와 같은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성과가 각 보험회사의 경쟁력인 것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보험산업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보험회사만의 몫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산운용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위험 전가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손실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욱 클 수 있다.

이러한 자산운용 규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1962년 1월 제정된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법률에서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 시 운용 가능한 자산운용 비중을 주식은 총자산의 40% 이하, 부동산은 30%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보유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보험회사들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보유 비중을 40% 이내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실상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매우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자산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9월 「자산운용지침」이 제정되었으며 보험회사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였다. 또한 1969년 10월에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부는 1977년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의 기본방향을 기간산업 등에 대한 산업투자확대, 유흥비 등 비생산적 투자의 금지, 공개기업에 대한 투자 및 용자 우선 원칙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경제개발에 자산운용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하였다. 보험회사들이 국공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였다. 1980년에는 정부의 기간산업육성 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육성책을 마련하였다. 1984년 6월 16일 ‘보험대출의 중소기업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매월 발생하는 총대출 증가액에서 약관대출과 주택보험대출 증가액을 공제한 잔여대출금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1985년 5월 23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험재산운용 지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방에서 조성된 보험자금을 해당 지방에서 운용해야만 했다. 이 당시 경제개발이라는 목적하에서 시행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규제들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앞서 언급한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과는 다소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내자 동원의 수단이 절실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산업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이 규제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선진화된 자산운용 기법의 도입이 늦어지도록 한 것은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후반부터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자산운용 규제 변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빠른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의 저축에서 조달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들도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1987년 5월에는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자금의 유가증권 투자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유가증권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

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 중심의 자산운용으로 안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유도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통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1989년 7월에는 ‘보험자금의 주택투·융자 방안’을 통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이 주택자금에 일정 비율을 융자하도록 규제하였고, 1992년 2월에는 제조업 및 중소기업과 같은 생산적 부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표준대출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에는 보험산업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 시장 진입을 원하는 외국보험회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국내 보험회사들도 그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었다. 1995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을 개정하여 자율운용자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율운용자산 제도란 보험회사에서 주식 및 해외투자 시 재산운용준칙에서 정한 비율²²⁾을 초과하여 자산운용을 허용하되, 그 초과한도를 총자산의 2% 이내로 제한한 제도이다. 한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로 자산건전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콜거래 중개기관을 통한 콜머니를 허용²³⁾하였다.

자산운용 규제 변화로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보험회사들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원활한 자금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1998년 2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을 개정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의 후순위차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1999년 8월에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비등록·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제도가 도입되었고, 생명보험회사의 장외주식 취득·매매가 허용되었다.

22) 주식은 총자산의 30%, 해외투자는 총자산의 10%.

23) 단, 허용범위는 총자산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방식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시 금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여신 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 시 편중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나 동일회사 채권·주식 소유한도 등이 새롭게 규정되는 등 한도관리제도가 보완되었다.

〈표 V-2〉 자산운용 규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1월 보험업법,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시작 - 1968년 9월 「자산운용지침」 제정 - 1969년 10월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과 내자 동원을 위한 수단에 중점을 둔 자산운용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우선 원칙 제시(경제 발전에 중점) - 1980년 중소기업육성책 마련 - 1984년 6월 16일 '보험대출의 중소기업지원강화' 방안 발표 - 1985년 5월 23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험재산운용 지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논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5월 '보험자금의 유가증권 투자확대' 방안 발표 - 1989년 7월 '보험자금의 주택투융자 방안' - 1992년 2월 '보험회사 표준대출 심사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6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개정, 자율운용자산 제도 도입 - 1996년 12월 콜거래 중개기관을 통한 콜머니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위기와 보험회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2월 보험회사 후순위차입 허용 - 1999년 8월 생명보험회사의 장외주식 취득·매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보험업법」 개정,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방식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 등

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1970년대 이후 보험산업이 급격한 외형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개선은 미비하였으며 이로 인한 많은 경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함께 간접적이고 사전에 방적인 감독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한국보험공사는 보험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내실경영을 유도하고자 종합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총 152개 분석항목 중 70개 항목을 판매효율, 영업수지, 자산운용, 모집조직, 기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는 분석비율 및 기준치 도달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종합경영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0년 생명보험 시장 개방이 시작되고 이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경영평가제도 및 지급여력제도와 중복되어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1999년 폐지되었다.

본격적인 지급여력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6월 생명보험회사들의 이연자산상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담보력 확대기준을 폐지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동 규정은 지급여력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여력으로 정의하고 자본금 등 지급여력 인정항목으로 구성된 지급여력의 합계액이 매 사업연도 말 현재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감독당국은 지급여력이 기준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었고,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 배당제한, 보험회사업의 일부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존의 지급여력제도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 제재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었다.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EU식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고 확보해야 할 지급여력 기준은 향후 5년에 걸쳐 6개월마다 단계적으

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에는 지급여력 및 재무건전성 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어 2000년부터 기존의 경영평가제도를 대체하여 시행되었다. EU 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액)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 중 보험리스크와 자산운용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EU식 지급여력제도는 산출방식이 단순하여 운용의 편리성은 있으나 보험회사에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2008년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 4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를 병행 시행하도록 하였다. RBC제도는 EU식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감독당국은 2007년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회사와 취약부문을 발굴하고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리스크평가제도(RASS)를 시행하였다.

RBC제도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규제(pillar I), 리스크 중심의 경영관리 유도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RAAS제도)(pillar II),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리스크 공시제도(pillar III) 등이 그것이다. 이중 최저 자기자본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 양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등으로 구성된다.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버퍼(risk buffer)로서 기존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에 해당된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이다. 요구자본에 대한 가용자본을 RBC비율로 산출하며, 100% 미달 시 경영

개선권고, 50% 미달 시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시에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목표 신뢰수준은 국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과 미국 RBC제도의 신뢰수준(95%) 등을 고려하여 95%로 설정한다. 한편, 총요구자본 산출 시 부문간 분산효과를 반영하는 데 공식은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총요구자본 산출 시 분산효과 반영 공식

$$\text{총요구자본} = \sqrt{\text{보험}^2 + (\text{금리} + \text{신용})^2 + \text{시장}^2} + \text{운영위험액}$$

-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 완전상관 (상관계수 1)
- 보험위험액, 금리 ·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 무상관 (상관계수 0)

보험회사 RBC비율 산출을 위한 가용자본은 기존 지급여력제도의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급여력금액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에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등을 합산하고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한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와 함께 책임준비금제도 또한 중요한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 방법이다. 1987년 재무부는 신설된 생보사들의 재무건전성 약화에 대비하고자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혼합비례방식인 K울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동안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으로 순보험료식, 해약환급금식 등을 회사별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일원화한 것이다.

1998년에는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이 제정되었다.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은 유가증권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가로 평가되는 보험자산과 원가로 평가되는 보험부채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결손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신계약비 이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계약비용과 회수기간을 일치시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V-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논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종합경영평가제도 도입 - 1990년 조기경보제도 운영, - 1999년 제도중복 등을 이유로 조기경보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여력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6월 본격적인 지급여력제도 시행, 지급여력 기준 미달 시 제재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위기 이후 지급여력 제도 개정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지급여력기준 5년에 걸쳐 6개월 마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1998년 12월 경영실태평가 제도 도입근거 마련, 2000년부터 기존 평가제도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BC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리스크평가제도(RASS) 시행 - 2008년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도입방안 마련 - 2009년 4월 시행, 2년간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 병행 시행 - 2011년 4월 RBC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준비금제도와 회계처리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혼합비례방식인 K올 방식 도입 - 1998년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 제정

Ⅵ. 보험시장 자유화의 평가와 시사점

1. 보험시장 개방

우리는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유화를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를 충족하는 시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보험시장 개방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외환위기를 촉매로 이루어졌으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개방은 1980년대 초반 대미 통상압력이 가중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시장개방 정도의 차이를 근거로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의하여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빠르게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있었을 당시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선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빠른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이에 부응하는 질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부실한 보험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구조조정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험 시장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지 못했던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보험산업 효율성 증대보다 외형 확대 경쟁 심화만이 초래되었고 보험회사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보험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것이다. 보험시장 개

방이 국내 보험산업의 자발적인 고민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던 것이 효율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첫 번째 이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시장 개방이 보험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보험산업 자유화 대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압력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외국보험회사에 문호를 개방하는 데 그치고, 그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차 시장개방 이후 보험산업 경쟁도가 향상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정부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산업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보험시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보험산업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외형확대 경쟁에만 치중한 영업방식을 고수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면서도 정부의 보호 아래 보험산업은 그대로 방치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타성은 제도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시장개방만으로 바뀌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신설 보험회사들까지 타성에 젖은 영업방식을 답습하며 시장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이 개발되고 판매채널의 전문화도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추가 시장개방의 성과는 이전에 이루어진 시장개방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개방 과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Boonyasai(1999)는 1990년대 보험시장 자유화가 진행되었던 4개 아시아 국가(한국, 필리핀, 타이완, 태국)들의 보험시장 자유화(시장개방과 규제완화)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보험시장 자유화가 보험시장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보험시장은 본격적인 규제완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생산성 증가에 실패했지만 규제완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보험시장 자유화가 시장 경쟁도를 확대시킨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2. 요율자유화

보험시장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보험요율 자유화에 대한 문제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금융자유화의 우선 과제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험요율 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요율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비교적 영향이 적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정요율을 범위요율로, 그리고 자유요율제도로 보험요율을 자유화하였다. 보험요율이 자유화된 이후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와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요율자유화 이후에도 가격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Boonyasai(1999)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자유화가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요율 자유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나 경쟁적 시장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도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시장에서 보험요율 규제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를 상승으로 보험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이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정부와 소비자보호 단체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형식적으로 이미 자유화가 완료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감독당국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표준이율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서두에서 설명하였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접적인 규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보험요율 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는 차후에 추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보험산업 규제완화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험시장 개방 및 효율자유화와 더불어 규제완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 판매채널, 소비자보호 등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시장 개방과 효율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인가제도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보험상품 다양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판매채널의 경우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판매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IT기술과 관련 매체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중심의 판매채널로 변화하였다.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과 관련한 감독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성숙시장으로 발전해 왔고 이제는 세계 7위의 보험시장으로써 그 규모에 맞는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변화들은 어쩌면 모든 나라의 보험시장이 성숙하면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성장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성장과정을 다른 국가에 비하여 보다 혹독하게 경험했을 뿐이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자유화 과정이 시작된 1983년 이후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자취를 되짚어본 것은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해결과정을 반추하면서 향후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성숙한 보험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역할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산업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개방의 시기와 규제수준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 자유화는 보험산업 내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완화 과정은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선진화된 규제수준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향후에도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보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양곤·류건식(1996),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대응방안」, 『금융학회지』.
- 구본성(1998),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와 계약자배당제도」, 한국금융연구원.
- 김병기(1996), 「보험계약, 요율의 규제와 자유화에 대한 일고찰」, 『보험학회지』.
- 박현문(2011), 「생명보험 걸어온 길, 가야할 길」, 매일경제신문사.
- 보험개발원(2001), 「21세기 보험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
- 생명보험협회(2010), 「생명보험협회 60년사」.
- 손해보험협회(2006), 「손해보험협회 60년사」.
- 안철경·이경희(2011),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왕윤중·라수엽(1997),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명신·천애정(2007), 「생명보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제20호.
- 이경룡(1990), 「보험시장의 개방과 대응」, 『금융경제연구』 제3권 제3호.
- _____ (1992), 「금리자유화와 보험산업의 대응」, 『보험학회지』.
- _____ (1996),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현안과제 및 전망」, 『보험학회지』.
- 이순재(2009),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 보험연구원.
- 정봉은·노병윤·목진영(1997), 「생명보험 가격 자유화 방안」, 보험개발원.
- 조해균(1994), 「금융자유화와 보험산업의 대응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 Berlin, J.(2010), “Market Maturity Model”, LIMRA.
- Boonyasai, T., M. Grace, and H. Skipper(1999), “The Effect of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n Life Insurer Efficiency”, Georgia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
- Eling, M., Klein, R.W. and Schmit, J.T.(2009), “Insurance Regulation in the

-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dependent Policy Report.
- Hess, T. and Trauth, T.(1998), “Towards A Single European Insurance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Vol. 3.
- Meier, Kenneth J.(1988),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The Case of Insura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Park, W.(1996), “Financial Liberalization: The Korean Experience”, Financial Deregul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NBER-EASE Volume 5.
- Rees R. and E. Kessner(2001), “Regulation and efficiency in European insurance markets”, Economic Policy.
- Robert W. Klein(1995), “Insurance Regulation in Transition”,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2 No. 3, pp. 363-404.
- Skipper, H., C. Starr, and J. Robinson(2000), “Liberalization of Insurance Markets : Issues and Concerns”, OECD.
- Souma, T. and Y. Tsutsui(2005), “Recent Competition in The Japanese Life Insurance Industry”, The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Osaka University.
-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01), “Fact Book Non-Life Insurance in Japan 2000-2001”.
- Williamson, J., and M. Mahar(1998), “A Survey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Princeton University.

부 록: 해외보험시장 자유화

1. 미국보험시장 자유화²⁴⁾

가. 뉴욕주 보험감독법의 제정

1899년 보험설계사 출신의 Equitable Life 창립자 James Hyde 사망 후 보험회사를 물려받은 아들의 무분별한 소비가 Equitable Life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정부는 조사에 들어갔고 이사회 운영, 자산투자, 사업비 지출, 보험료, 보험약관 등 모든 면에서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주 감독당국의 조사에서 Equitable Life, New York Life, Mutual of New York 등 3개 회사가 부실회사로 꼽혔으며, 이 사건을 토대로 생명보험 감독규제는 강화되어 뉴욕주 보험법(New York State Insurance Code)의 기반이 되었다.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정부채권과 우량 회사채 등으로 한정하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였다. 정치 기부금도 금지되었고 기만적 광고나 회계, 사업비 지출 등이 금지되었다. 이른바 톤틴(tontine)연금은 금지되었고 4가지 종류의 표준 보험약관이 승인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자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제한이 가해졌다.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 경영전반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형태였다. 뉴욕주 보험법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뉴욕주 보험감독관(Deputy Superintendent) Appleton은 뉴욕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뉴욕주 보험법뿐 아니라 그들이 영업하는 모든 주의 감독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주에서 보험계약은 뉴욕주 보험법에 의해 감

24) Meier, Kenneth J.(1988)의 내용을 정리함.

독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손해보험회사들이 파산에 직면하고 살아남은 보험회사의 보험료가 급상승하면서 또 다시 보험회사 실태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보험회사들의 협력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지역 기관이 존재하였으나 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보험회사들은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험료 덤핑을 시도하였고 부실화되었다. 위원회는 개별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협력을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911년 뉴욕법원은 화재보험회사들을 위한 보험료 산출 기관을 허용하였고 보험감독기관은 요율이 제출되면 불공정하게 차별적이지 않은가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1913년 모든 손해보험 종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1922년 뉴욕은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적절(reasonable and adequate)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험료에 대한 규제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업이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 당국이 보험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NAIC이 1914년 4가지 모델법을 제정하고 많은 주들이 이를 채택하였는데 모델법의 주목적은 보험료 산출기관(rate bureaus)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보험료 규제는 나중의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주들이 적절한 보험료와 수익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집단적 보험료 결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자율적 가격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표준사망률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적 보험료 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가하던 뉴욕주는 1928년 비우량 회사채, 우선주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고, 1934년 FHA 모기지, 1938년 주택건설 프로젝트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였다. 1951년까지 일반주 투자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1958년 자산의 2%를 규정된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우회로를 열어주었다. 감독당국은 투자자산 카테고리 내에서도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주어진 규정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했으며, 일반 주에 대한 투자 제

한 때문에 대공황의 충격을 피해갈 수 있었다. 자산운용 규제 정도는 주마다 상당히 다양했는데 1962년 우회로 규정은 자산의 2%에서 75%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주 당국은 주택이나 대학 등 해당 주 내에서의 사회기반 투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나. McCarran-Ferguson법과 보험료 규제 강화

손해보험산업의 카르텔적 성격은 1944년 논란이 되었다. 손해보험산업은 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고 따라서 연방 공정거래법(antitrust act)의 예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25개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기관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고 이는 카르텔 논란을 촉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험료 산정기관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이 보험업자들에 대한 가입강제, 보험료 고정, 비가입자들에 대한 거래거절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보험업이 주간통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보험업이 주정부의 감독대상이라는 기존의 관행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회사들과 보험료에 대한 세수 확보 능력 상실을 우려한 주 감독당국은 크게 반발하면서 대법원의 South-eastern 판결이 의회에서 확대되기 전에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NAIC은 보험업의 연방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를 포함한 안건을 제정하였으며, 상원의원인 McCarran과 Ferguson은 이 안을 수정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고 결국 상·하원을 통과하였다. McCarran-Ferguson법은 주 감독당국의 감독권한과 조세권한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을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으로 국한하며,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의 제정으로 보험업자들이 주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협력행위 또는 공동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주 감독당국은 보험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McCarran-Ferguson법의 통과는 주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보험

료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 1944년까지 공동행위(collusion)를 허용하는 보험료 규제는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36개 주에서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대한 가격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18개 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7개 주만이 보험료 규제를 하고 있었으며, 2개 주에서만 일반손해보험 가격규제가 있었다. 또한 규제 방식도 불공정한 보험료에 대한 거부 정도로 단순한 수준이었고 실제적인 보험료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욕주 정도가 손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강한 사전 승인(prior approval)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McCarran- Ferguson법의 통과 이후 NAIC은 본격적으로 보험료 규제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19개 단체로 구성된 All-Industry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NAIC는 보험료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추진하였고 화재보험업계는 이에 반대하며 보고 후 사용(file and use)을 주장하였다. 결국 화재보험회사들은 보험요율 제출 후 15일 내에 감독당국의 승인거절이 있을 경우 보험요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NAIC와 All-Industry Committee는 보험요율 규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모델 법안을 제안하였고 1951년 모든 주에서 보험료 규제 법안을 채택하였다. 각 주의 규제법은 동일하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기관의 보험료 사용을 금지하고 보험료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경쟁가격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화재보험 중심의 경쟁 억제책이 자유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결정되었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다. 경쟁 확대와 보험료 자유화 논란

All-Industry Bill은 손해보험 산업에 정부주도의 카르텔을 허용한 것이었고 이전까지 분산되어 있던 요율 산출기관들은 1971년 Insurance Service Office(ISO)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All-Industry Bill에도 허점이 있었고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경쟁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정부주도의 카르텔은 힘을 잃게 되었다. 1800년대 중반까지 미국 보험회사들은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외형확대에 치중하였고 카르텔에 속하지 않은 독립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외형확대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All-Industry Bill의 허점을 이용한 기존 보험회사들의 경쟁도 강화되었다. 당시 보험요율 산정기관의 요율과 다른 요율을 사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보험료 인하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었으므로 보험회사들의 신청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부 기업성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요율 산정기관의 보험료를 사용하고 개인 물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저렴한 직판 채널의 증가와 사후 배당을 통해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를 보일 수 있었던 상호회사의 존재도 경쟁 확대의 원인 중 하나였다. 당시 미국보험산업은 영국과 달리 단종보험사(mono line insurance company)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들이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커지면서 뉴욕주는 1949년 종합보험회사(multiline insurance company) 출현을 허용하게 된다. 종합보험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상의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단종보험회사의 상품 조합에 비해 15% 가량 저렴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산업의 가격경쟁을 확대하였다.

보험시장 내에서 자발적인 가격경쟁이 진행되면서 감독당국은 과연 가격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료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허용(no file)하고 있었으나 과도한 가격경쟁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타 주 보험 감독당국의 보험료 사전 승인제도(prior approval)에도 변화 요구가 일게 되었다. 1967년 플로리다, 조지아주에서도 no file 제도를 도입하였다. 1968년 뉴욕주도 경쟁보험료법(competition rate law)을 제정하면서 보험료 자유화에 동참하였고 1969년 19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험료 자유경쟁체제 도입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비자 단체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요

구하면서 중단되었다. No fault 자동차보험의 등장으로 보험회사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면서 뉴욕주는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규제에 나섰으며, 1970년대 중반 의료과실보험 파동 후 캘리포니아주도 동 보험에 대한 보험료 규제를 도입하였다.

라. 보험회사의 파산과 RBC제도 도입

1985년에는 책임보험 파동(The Liability Insurance Crisis of 1985~1986)으로 인해 감독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다.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미래 보험료 지급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였다. 한편 1980년대 기업성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회사들은 자본 확충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파동의 원인에는 보험회사들의 현금흐름 언더라이팅(Cash Flow Underwriting), 재보험 파동, 소송의 급증 등이 지목된다. 1970년대 블루칩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보험회사들은 높은 운용자산 수익률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였고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인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보험회사들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신규 설립에 규제가 전혀 없었던 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지급이 더욱 장기였기 때문에 현금흐름 언더라이팅(Cash Flow Underwriting)을 이용한 수익확대에 나서게 되었고 1980년대 반 이상의 재보험사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되었다. 재보험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원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추가로 소송관련 제도 변경으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급증하게 되었다.

1977년에서 1981년 사이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유래 없는 고금리 환경에 직면하였고 금리 자유화로 투자형 금융상품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의 투자형 상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형 보험상품 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를 판매하였으며, 보증 수익

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고수의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1987년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고 1989년 대부업체들(S&Ls)의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졌다. 1989년 고수의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부실화되었고 1990년에서 1991년 Mutual Benefit, First Executive, Equitable, Travelers 등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해지급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파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손해보험회사들의 위기로 인해 하원은 손해보험회사로 인한 금융 위기 위험을 경고하면서 현재의 감독 시스템이 보험회사들의 지급능력을 감독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으며, 1990년대 초 생명보험사들의 파산이 더해지면서 NAIC는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크 중심 지급여력 제도인 RBC 제도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992, 1993년에 도입하였다. RBC제도의 도입으로 미국의 보험 감독제도는 지급능력 규제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미국의 보험감독 규제는 이때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NAIC는 2008년 AIG의 파산으로 기존 감독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하였다.

2. 유럽 보험시장 자유화²⁵⁾

가. 유럽 보험시장의 자유화 과정

유럽 보험시장의 자유화는 1957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 등 6개국이 회원국 간의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통합하고 경제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체결하고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설립하면서 출발한다. EEC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

25) Hess, T. and Trauth, T.(1998)의 내용을 정리함.

과정은 각 산업별로 다른 일정으로 추진되었는데 보험산업의 경우 규제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 간 감독제도가 상이하며 보험시장의 신규진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 통합 작업이 1994년 7월까지 세 차례의 Directives 제정으로 완성되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 진행된 첫 번째 Directives는 유로지역 재보험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치한 국가의 감독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았다. 1990년까지 진행된 두 번째 Directives는 다른 회원국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cross-border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재보험산업의 경우 1964년 이미 허용되었다. 1988년 손해보험의 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cross-border가 허용되었고 1990년 자동차보험과 일부 생명보험에 대한 cross-border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 보험계약자 보호를 이유로 자국의 감독규정 적용을 고집했고 이로 인해 외국 보험회사의 다른 회원국 진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4년 유럽연합의 모든 보험시장에 적용되는 단일한 감독제도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함을 인식한 EC는 세 번째 Directives로써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정책을 입안하였다. 첫째, 유럽연합의 한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허가절차 없이 타 국가에서도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에 의해 이행되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financial reporting)와 지급능력규제에 관한 단일한 규칙을 제정한다. 셋째, 보험회사의 행위에 적용되는 감독 framework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것이 아닌 보험업 영업허가를 득한 국가의 것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각국은 보험료 규제나 계약에 관한 규제와 같은 자국의 감독정책을 유지하는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각 국가의 감독제도 간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영국 또는 프랑스와 같은 최소규제 모형으로 감독제도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규제가 강한 국가의 보험회사들이 경쟁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의 보험감독제도가 변화하도록 노력

할 수 밖에 없으며, 감독제도상의 불이익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보험회사가 퇴출되는 경우 신규보험회사는 규제가 덜한 국가에 설립될 수 밖에 없고 보험회사의 본사 이전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감독제도는 도태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험회사가 강한 보험료 규제가 있는 독일보험회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위험이 독일보험회사보다 높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영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도 독일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을 제한하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1970년대 유럽 보험시장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속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럽 국가 중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가장 자유화된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독일을 비롯한 독일어권 국가들과 이탈리아 등은 매우 엄격한 규제하에 있었다. 보험시장이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를 띠었던 점은 EEC의 framework 안에서 유럽 단일보험시장(European internal insurance market)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1973년 EEC 회원국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에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가 추가된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법적, 관습적 제도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유럽국가들 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보험시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형태가 상이한 각 국가의 보험산업을 경쟁시키는 방향으로 선화하게 된다. 1970년대까지 유럽의 보험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전의 사업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품 개발, 보험료 조정, 판매채널 다양화 등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컴퓨터의 발달로 보험회사 경영시스템만이 지속적으로 발전했을 뿐이었다. 1970년대 보험산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등의 금융업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1970년대 유럽 보험산업은 감독당국과 협회 등에 의해 주도되는 호송선단 경영방식의 형태를 띠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보험시장에는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회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것 보다는 보험산업을 둘러싼 실질적, 제도

적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이 시기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동유럽지역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가 촉발되었다. 1994년 7월 Third Directives가 회원국 법률에 통합되면서 유럽단일보험시장 형성이 완료되게 되었다.

유럽단일보험시장에 따른 보험시장 자유화는 규제가 강했던 보험시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진전되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국영보험회사들이 민영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 높은 실업률, 세수 감소 등으로 각국의 사회보험 시스템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로 말미암아 많은 보험회사들은 기존 자국 보험시장의 호송선단 안에서의 수동적인 사업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려 하였으며, 보험산업은 과거와 같이 규제중심의 산업에서 변화하게 되었다. 각국에는 여전히 보험산업 감독기관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보험회사들이 법률 규제를 이행케 하고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

나. 독일과 영국의 보험시장

1994년 유럽단일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 독일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규제의 정도가 강한 국가로 꼽히며, 영국은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로 꼽혔고 두 보험시장은 유럽전체 보험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 본 절에서는 1994년 이전과 이후 독일과 영국의 보험시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엄격한 지급여력 규제가 존재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 상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감독당국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 보험회사의 채택을 강제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보험시장에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보험계약조건과 보험료, 기대 수익과 비용, 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자세한 영업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감독당국은 매우 오랜 기간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진입규제의 일환으로 작용하였다.

〈부록 표 1〉 독일과 영국의 보험감독제도 비교

구분	독일	영국
지급여력	엄격한 규제	모니터링
시장진입	진입 억제	모니터링, no entry deterrent
보험계약	표준화	규제 없음
보험료	규제	규제 없음
순익	강제 재분배	규제 없음
서비스	민원 취합	규제 없음
포트폴리오	자산 유형 규제	규제 없음
판매채널	수수료 상한	공시

자료: Rees R, and E. Kessner(2001).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 또한 엄격하게 규제되었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완전히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에서 단일 상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었고 리스크 카테고리가 조약하였다. 생명보험은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의 경우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했고 이에 대한 평가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상품경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고정금리 저축성보험의 금리가 3%로 표준화되는 등 보험계약의 일부가 표준화되었다. 보험료의 계산은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계산방식에 의한 기대손실에 각 보험회사의 비용을 감안한 부가보험료를 추가할 수 있었으며, 최종 보험료의 3%로 이익률이 제한되었다. 독일 보험산업은 수익에 대한 강한 규제가 있었으며 사후적으로 보험료의 3%를 상회하는 수익의 90% 이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하였다. 독일 보험당국은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을 취합하여 합산한 통계를 매년 발표하였다.

독일 보험회사들은 주식자산 보유 비중 제한과 같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총자산 중 60% 가량이 국공채 등 채권자산에 투자되었다. 판매채널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으나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당은 보험료의 1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었으며, 전

체 사업비는 보험료의 30%를 초과할 수 없었다.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영국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지급여력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다. 만약 지급여력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DTI는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지급여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보험회사의 신규 보험판매를 제한하고 보험료 개정을 요구하며 자산 포트폴리오에 제약을 가할 수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실 보험회사의 사업을 건전한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급여력규제를 충족할 경우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보험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DTI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자본 요구량을 충족하며 적합한 경영진에 의해 회사가 운영됨을 보여야 했으나 이러한 규제는 비용과 시간상에서 신규진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한편 영국 보험시장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규제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의 제정으로 생명보험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자신이 다양한 상품 중 특정 상품을 추천하고 있는지와 한 회사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1995년 공시 규정(disclosure regime)이 도입되면서 생명보험 판매자들은 설계사 수수료를 포함한 보험사의 사업비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야 했다.

1994년 Third Directives 이후 유럽지역에서 보험회사의 진입규제는 최소화되었다. 보험회사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200만 유로, 손해보험 100만 유로의 최소요구자본을 충족하고 향후 3년간의 영업계획을 제출하는 정도의 기준만을 충족하면 되었다. 1994년 Third Directives 이후 EU 지역에서 일반적이던 보험요율 규제도 거의 사라졌다. 현재는 프랑스 자동차 보험의 bonus-malus 제도 정도의 가격조정 규제가 남아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요율에 대한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계약자가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받도록 하는 수익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3. 일본 보험시장 자유화²⁶⁾

가. 생명보험

일본의 보험시장은 1994년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 압력에 따른 보험합의를 통해 자유화가 촉발되었다. 1996년 미일보험협회의 기본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입 허용, 본체에 의한 제3분야 상호진입 허용,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상품·요율의 보고제 도입,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보험업법이 발효되었다. 1996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이전에 존재 하던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Law), 보험계약법(Law concerning the Control of Insurance Soliciting), 외국보험회사 법(Law concerning Foreign Insurers) 등 세 개의 보험관련 법령들이 개정 통합되었다. 1996년 하시모토 총리는 금융 빅뱅(financial Big Bang)의 시작을 선언했고 1997년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는 향후 4년에 걸친 보험시장 자유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1998년 일본판 금융빅뱅을 표방한 금융시스템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보험업법은 1939년에 제정되었으며, 보험요율, 배당률,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엄격하게 규제되었으며, 20개 보험사 체제가 세이부-All State 보험이 영업허가를 받게 된 1975년까지 유지되었다. 1996년 보험업법의 개정은 보험산업을 규제에서 자유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전후 기간 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은 철저히 분리되어 왔고 1993년 은행과 증권사 간 자회사를 통한 겸영이 허용되었으나 보험산업은 겸영 허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1993년에서 1994년 사이 예금이자율 규제가 철폐되었고 1998년에서 1999년 증권 거래 수수료 규제가 철폐되었으나 손해보험 보험요율은 2001년까지 자유화되지 않았고 생명보험 보험요율과 배당률의 경우에는 2002년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보험산

26) Souma, T. and Y. Tsutsui(2005)의 내용을 요약함.

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진행된 금융산업 자유화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비경쟁적인 상태로 유지되었다.

1996년 새로운 보험업법(a new Insurance Industry Law)이 발효된 이후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에 진입했으며, 이로써 생명보험회사 수는 4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6년 개정된 보험업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자회사를 통한 겸영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형 보험사들의 파산과 M&A가 발생하였다. 한편 1997년 4월에는 ‘표준생명표 1996’을 책임준비금 산출 시 적용토록 하고 보험료 산출은 회사가 자유롭게 산출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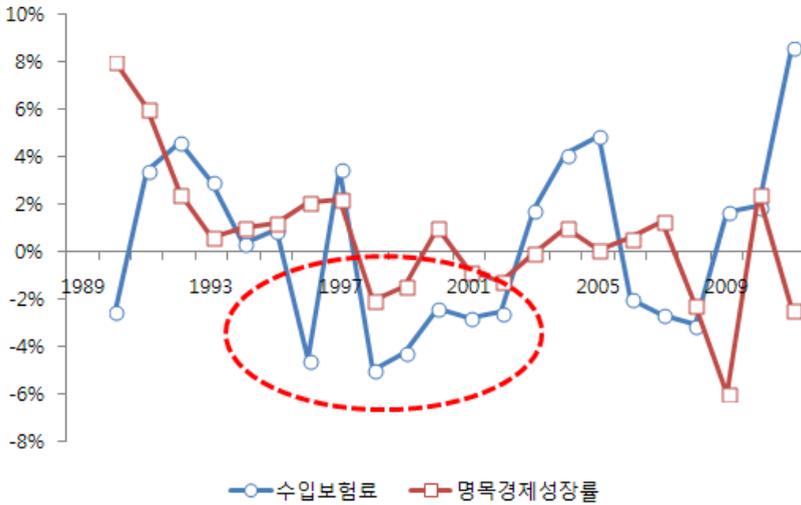
한편 1997년 닛산 생명보험의 파산은 생명보험회사가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깬고 그동안 생명보험회사 경영을 규율하던 호송선단 경영방식(convoy administration system)의 종말을 가져왔으며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을 다루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1998년에는 파산한 보험회사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자보호회사(Life insurance Policyholder Protection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 1996년 신보험업법 시행에 의해 미국의 RBC제도를 절충한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부터 공시되었다. 이후 1998년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고 1999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 법은 지급여력에 문제가 있던 보험사들이 외국보험사와 자본협력을 하거나 자회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다이야쿠, 다이쇼, 치요다, 교에이, 도쿄 등의 5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이 파산하였고 생명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둔 손해보험회사들의 합병으로 생명보험회사들도 합병되었다. 결과적으로 1975년에서 2002년 사이 20개의 신규 생명보험회사가 진입하였고 7개 보험회사가 퇴출되었으며, 1975년에서 1999년까지는 회사 수가 증가하였고 1999년에서 2002년까지는 회사 수가 감소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말 버블 경제로 불리는 경기 호황을 누리다가 1990년과 1991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헤이세이 디프레션(Heisei Depression)

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 10%를 상회하던 생명보험 계약액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1997년에는 10% 감소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으며 2001년을 제외하고 200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부록 그림 1〉 일본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생명보험연감 각 연호, Bloomberg.

생명보험산업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1991년 7.6%에 달하던 시중 금리가 2001년 1.9%까지 하락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이차역마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예정이율의 차는 1993년 1.57%의 역마진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까지 역마진이 지속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닛산, 도호, 다이야쿠 등의 중형 생명보험회사들이 FY1997에서 FY2000 사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생명보험시장의 자유화 효과가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생명보험시장 자유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를 향상시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나. 손해보험산업

일본 손해보험산업의 자유화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1996년 보험업법 개정과 일본 금융시장 개편(japanese “Big Bang”)의 일환으로 1998년 제정된 금융개혁법(Financial System Reform Law)이 전환점이 되었다.

1996년 10월 재무성은 손해보험산업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법안을 공표하였다. 동 법안은 임의 자동차 보험에 대한 직판 허용, 화재보험의 부가보험요율에 대한 권고요율(Advisory rating) 확대, 공시제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일본과 미국의 보험 협상이 완료되면서 보험요율 산정기관에서 계산된 요율 사용 의무화 폐지, 차별화된 보험요율의 자동차보험 허용, 화재보험의 부가보험료에 대한 권고요율 적용범위 확대, 공시제도의 적용대상 보험 유형 확대 등의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996년 손해보험회사를 위한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이 마련되었다. 보호기금은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파산한 보험회사에 최대 300억 엔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개사 제도는 1996년 시행되었다.

1997년 보험위원회는 보험업의 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보험요율 산정기관의 개편을 포함한 자유화 법안, 금융기관 간 겸업화 확대, 지주회사의 도입,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 등을 제안하였고, 재무성은 보험회사의 파산에 따른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지급보증 시스템(Payment Guarantee System)을 도입하였다. 1998년 금융개혁법(Financial System Reform Law)이 승인되면서 계약자 보호 회사 설립, 보험업 조기경보조치 도입, 보험료 산정기관 개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손해보험은 1998년 이전 요율산정회의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던 데에서 벗어나 1998년 7월 화재, 자동차, 상해 보험 등에 대해 의무사용이 폐지되고 참고순보험요율 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개혁법으로 인해 손해보험은 투자형 상품(investment trust)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6월에는 재무성의 독립적인 기관인 금융감

독청(Financial Supervisory Agency)이 설치되었으며, 1998년 12월에는 손해보험 계약자 보호 회사가 설립되었다. 2000년 6월에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호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이 용이해졌고, 은행을 통한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2000년에는 금융감독청과 재무성의 금융제도기획부서(Financial System Planning Bureau)가 통합되면서 금융 서비스 기관(Financial Services Agency)이 설립되었다. 또한 2000년 8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교차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2001년에는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보험회사 소유가 전면 허용되었고, 2001년 1월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회사를 통한 제3보험(third sector)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2001년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계약법(Consumer Contract Law)과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Law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이 발효되었고 DC형 퇴직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4. 해외보험시장 자유화 평가

본 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보험시장 자유화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각 나라마다 보험산업이 처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보험산업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험산업 발전에 따른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보험산업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교차해왔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산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되었기 보다는 자생적으로 발달해왔기 때문에 자유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진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보험산업 감독규제는 1980년대 보험회사의 대규모 파산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RBC제도가 도입된 이후 안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산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부터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산업 자유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단지 우리나라보다 앞선 보험시장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대한 최종적인 규제환경이 사전적 규제를 배제하고 자본적정성 규제와

같은 사후적 규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인위적인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거쳤다. 유럽 통합의 일환으로 유럽의 보험산업은 1970년대부터 1994년까지 세 차례의 Directives 제정을 거쳐 자유화되었다. 유럽 통합 이전 각국의 보험산업은 규제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 간 감독제도가 상이하며 보험시장의 신규진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나 세 번째 Directives 내용 중 “보험회사의 행위에 적용되는 감독 체계 (framework)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것이 아닌 보험업 영업허가를 득한 국가의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태가 상이한 각 국가의 보험산업이 경쟁하게 되었다. 국가 간 보험산업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의 보험회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유럽 각국의 보험산업은 가장 자유화된 국가의 형태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 통합 이전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자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자유화과정이 단순한 시장개방과 제도 정비가 아니라 각 국가의 보험산업 간 경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자유화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는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통상압력에 따른 외부의 힘에 의해 보험산업의 자유화가 촉발되었으며, 자유화 이후에도 경제적 충격에 의해 많은 보험회사가 파산에 직면하면서 자본적정성 규제 위주의 감독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차역마진에 직면한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보험시장 자유화의 효과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역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창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 세 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발행일 2014년 6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